

제주 2024- 002호

## 운항관리규정 심사증명서

선 명 : 송림블루오션

선박번호 : MPR-176214

항 로 : 제주 - 완도

사업자명 : (주)송림해운

사업자 주소 :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동면길 409-1

위 선박은 운항관리규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 완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여객선 송림블루오션호 운항관리규정

(내항여객운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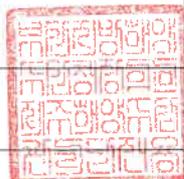
2024년 05월 03일

(주) 송림해운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 항목장	개정이유 및 내역
1	'24.05.03.	전 장	신규 제정





# 목 차



<b>제1장 목적 및 정의</b> .....	<b>1</b>
제1조(목적) .....	1
제2조(용어의 정의) .....	1
<b>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b> .....	<b>3</b>
제3조(안전관리 목표) .....	3
제4조(안전관리 방침) .....	3
제5조(안전관리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	3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	3
<b>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b> .....	<b>4</b>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	4
제8조(안전관리조직) .....	4
<b>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b> .....	<b>5</b>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	5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	6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	7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	8
<b>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b> .....	<b>9</b>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	9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검사) .....	9
<b>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b> .....	<b>10</b>
제15조(채용·승진·배승관리) .....	10
제16조(인수인계) .....	10
<b>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b> .....	<b>11</b>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	11
제18조(항해업무) .....	12
제18조2(야간항해) .....	16
제19조(입·출항 시 업무) .....	16
제20조(통신업무) .....	18
제21조(여객업무) .....	19



제22조(여객준수 사항의 전달) .....	20
제23조(화물관리) .....	21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	23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	24
제26조(정박 및 계류) .....	24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	25
<b>제8장 비상상황 대응</b> .....	<b>25</b>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	25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	25
제29조(비상대응) .....	25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	28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	29
<b>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b> .....	<b>29</b>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	30
제33조(육상설비 점검) .....	30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	30
제35조(유류관리) .....	31
<b>제10장 자료관리</b> .....	<b>32</b>
제36조(문서관리) .....	32
제37조(문서생산 등) .....	33
제38조(문서관리대장) .....	33
제39조(문서의 폐기) .....	33
제40조(해도관리) .....	33
제41조(여객선 이력장부관리) .....	33
제41조의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	33
<b>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b> .....	<b>34</b>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	34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	35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	35
제45조(규정의 적용) .....	36

**【붙임자료】**

○ [붙임1] ~ [붙임18] .....	38 ~ 81
------------------------	---------



## 제1장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운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항업무의 책임 및 업무수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자"란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여객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해사안전감독관"이란 「해사안전법」 제58조에 따라 해사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란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의 수립·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와 그 밖에 선원법시행령 제3조의 해원을 말한다.
6. "부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선장 및 직원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7. "육상작업원"이란 육상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선내작업원"이란 선박에서 여객 또는 차량의 정리, 유도 등의 작업에



9. "항해계획"이란 기점·종점, 기항지, 항행경로, 항해속력, 운항횟수, 출항 시간, 계절 운항시간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운항기준도"란 항로(기종점, 기항지, 침로, 변침점, 항해장애물 등), 표준운항시각, 항해속력,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하는 구간, 기타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선박의 항로도(항로도를 말한다).
11.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 정한 위험물 및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건과 총포, 도검류 등을 말한다.
12. "차량적재도"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부대행검사기관(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인한 차량의 배치 및 적재방법등이 표시된 도면을 말한다.
13. "화물고박장치"란 화물을 선체 또는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14. "화물의 적재한도"란 「선박안전법」 제28조의 복원성 유지 및 이 규정 제12호의 차량적재도 등에 따른 차량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화물 등 선내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말하며 운항관리규정 심사 시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항로도"란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해도 등을 말한다.
16. "운항관리센터"란 「해운법」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설치한 지역사무소를 말한다.

## 제2장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제3조(안전관리 목표) 회사는 관리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
2.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3.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4. 여객 및 화물보호

제4조(안전관리 방침) 회사는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방침을 수립·시행한다.

1.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 준수
2. 안전 및 환경보호 관련 비상대응훈련의 생활화
3. 부적합사항 발생 시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4. 법령에서 규정한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
5. 대 고객 서비스 강화

제5조(안전관리 방침 등의 이행·유지 및 확인) ① 회사는 인명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이행·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내부심사 등을 통하여 목표와 방침에 대한 이행·유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 및 선원의 책임과 의무) 모든 임직원 및 선원은 회사의 운항 관리규정이 항상 양질의 수준으로 운영·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1. 운항관리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여객선 안전의 우선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운항 지양
3.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자격·경력을 갖춘 선원(예비원 포함)의 채용
4. 과승·과적 예방을 위한 승선인원, 차량/화물 집계표 확인 및 정확한



## 화물 계측 실시

5.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원의 적절한 교육·훈련 실시
6. 위험물 적재·운송방법 숙지 및 관련법령 준수
7.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공
8.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법령의 준수

## 제3장 안전관리 조직 및 체계

제7조(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회사가 소유·관리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육·해상 직원의 책임, 권한,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물적·인적자원(안전운항을 위한 최신정보 포함)을 제공한다.

제8조(안전관리조직) ① 회사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조직을 두며,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의 관할구역과 안전관리의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②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 현황 및 안전관리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본사(주된 사업소)

####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주)송림해운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동면길 409-1	061-281-8597 (061-284-8550)

#### 나. 관할구역

- 제주항 ~ 완도항

####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회사최고경영자는 수석안전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2. 지점(영업소)

###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주)송림해운 제주선박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연안여객터미널	T. 064) 758-8889 F. 064) 751-8889
(주)송림해운 완도선박영업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 연안여객터미널	T. 064) 758-8889 F. 064) 751-8889

### 나. 관할구역

- 제주선박영업소 : 제주↔하추자
- 완도선박영업소 : 완도↔하추자

### 다. 안전관리책임의 범위

- 제주선박영업소 : 제주↔하추자(제주항, 하추자 정박 포함)
- 완도선박영업소 : 완도↔하추자(완도항 정박 포함)

## 3. 대리점

### 가. 기본사항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팩스)
하추자대표소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3길24	T. 064) 711-9982 F. 064) 712-9982

③ 안전관리조직도는 [붙임18] 와 같으며, 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및 해당 부서장간에 긴밀하게 협조한다.

## 제4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임무 등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의5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 중 1인은 수석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

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여객선 운항과 관련한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변경 시 지체없이 제주운항관리센터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 ①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관리규정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여객선의 운항 및 기타 수송의 안전 확보에 대해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행한다.
3. 선박의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수송의 안전을 확보한다.
4. 안전관련 육상직원 및 육상작업원을 지휘하고,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5.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제반 규정을 준수하도록 선원을 지도·감독한다.
6. 여객선의 정비계획에 따른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증서의 관리 및 유지에 대해 감독한다.
7. 선장 및 기관장이 보고한 시설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다.
8. 여객의 승·하선시설 및 부잔교(육상시설 포함) 등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여객선 접·이안 및 여객 승·하선 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0.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기타 관계기관의 직원의 요청시 선박 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및 최고경영자에게 문서

로 보고한다.

11. 관계법령의 개정, 사내조직 또는 선박의 변경, 항로의 신설 또는 폐지 등 당해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선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신청한다.

12. 운항관리규정 관련 문서를 관리한다.

②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수석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2. 선장과 협력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관리규정 및 기타 비상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유지한다.

3. 안전 및 오염방지활동과 관련하여 선원 및 육상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수시로 여객선에 승선하여 본선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수석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여객선사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활동을 이행한다.

제11조(안전관리책임자의 근무체계)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는 동안에는 육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 근무지는 제주선박영업소로 한다. 여객선이 운항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여객선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안전관리책임자가 10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해운법 시행령」제12조의4와 관련한 별표1“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한 자)을 가진 자로 업무대행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제주운항관리센터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육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총괄하여야 하므로 선원으로 승선할 수 없으며, 선원 또는 예비선원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임 할 수 없다.

제12조(육상직원의 책임과 권한) ① 여객담당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객의 승하선에 관한 업무 총괄
2. 터미널 승선권 발급 및 승선절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 협의 및 안전조치
3. 여객 승하선시설 및 부속선 등에 대한 관리 업무 총괄
4. 여객안전관리선원에 대한 교육·관리
5.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 보관·관리
6. 여객대피시설 등 여객선 내 여객시설에 대한 관리

② 화물담당자는 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물의 적재 및 하역에 관한 업무 총괄
2. 화물의 적재에 관한 선장·안전관리책임자와의 업무협의 및 안전조치
3. 육상작업원에 대한 관리업무 총괄
4. 화물선적 작업완료 시 선장에게 화물목록 제출(위험물 및 전기자동차 선적 시 종류·위치(Deck) 등 포함하여 제출)

③ 해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원의 채용·배승·휴가에 관한 사항
2. 선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신규채용 선원 직무교육
4. 제반증서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④ 공무담당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수리, 선용품 및 기부속 공급
2. 안전설비 보급 및 관리

3. 선박의 정비계획과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확인
4. 관계기관 등의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 제5장 선장의 책임과 권한 등

제13조(선장의 책임과 권한)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운항, 여객과 화물 보호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을 시행하고 「선원법」 등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필요한 경우 선장복무방침을 수립하여 선원이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인명, 여객선 및 환경보호와 화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에 최우선적인 결정권한이 있으며, 필요할 경우 회사에 물적·인적 지원 요청 권한을 갖는다.

④ 선장은 선박의 통상업무 중 여객관리는 사무장 또는 여객안전관리선원<sup>6)</sup>(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 화물관리는 1등항해사, 구명·소화설비 관리는 2등항해사, 객실관리는 사무장, 정비관리는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sup>6)</sup>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5의5에 따른 여객선 상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선원

⑤ 선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본선선원이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① 선장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적성심사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

는 아니 된다.

## 제6장 인력의 배치와 운용

제15조(채용·승진·배승 관리) ① 회사는 해당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선원의 채용·승진 및 배승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장·기관장의 채용·승진 시에는 승무경력, 면담 등을 통하여 지휘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선원 채용·승진에 있어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③ 회사 및 선장은 선원과 선박 관련증서 및 선원 교육훈련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 선원의 승선, 항해시간별 적정 인원배치 및 승선선원의 자격유지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인계)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외의 선원은 구두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선장 및 기관장의 예기치 않은 일방적인 퇴사 등으로 인수인계서 작성이 불가능 할 경우 차하위자가 대행한다.

② 선장의 인수인계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선장 이외 선원의 인수인계서는 선장에게 제출한다.

③ 선장 및 기관장의 인수인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상 업무 및 비상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임무와 책임
2. 선원의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외부·내부요인
3.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생하였던 사고경력 및 대처요령
4. 선원의 임무와 책임과 관련한 문서 관리
5. 항해·기관·구명·소방 및 통신설비작동 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④ 필요시 선원은 후임자의 여객선 적응 및 관련 교육을 위해 동승할 수 있다.

⑤ 선장 또는 기관장의 단기간의 업무대행을 위해 예비 선장 또는 예비 기관장으로 교체 시에는 다음 주요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붙임17] 해상직원 인수인계서 사항의 내용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항해 기관 구명 소방 및 통신설비 작동실태 및 결함 등 참고사항
2. 연료유 및 윤활유 잔량, 수급계획 또는 수급일정 등.
3. 여객실 및 여객 편의시설 관리 상태 또는 정비 계획
4. 관계기관 수발신 공문철 및 주요 선박증서
5. 기타 주요 업무 등

### 제7장 여객선운용계획의 수립

제17조(여객선 제원 및 운항구역 등) ① 여객선 송림블루오션호의 제원 및 운항구역은 다음과 같다.

선종	진수일자	총톤수	기관출력
카페리여객선	2017. 05. 14	2,374톤	1,471KW ×2
선박치수(m)	항해속력	항로	항해구역
87.50×13.50 ×4.00	14.0노트	제주-완도 (기항지:하추자도)	연해

② 여객선 송림블루오션호의 승선인원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승선인원(선박검사증서상) : 249 명  
( 여객 240 명, 선원 8 명, 임시승선자 1 명 )
2. 최소승무정원 : 7 명



(선장, 1항사, 2항사, 갑판부원, 기관장, 1기사, 기관부원)

제18조(항해업무) ① 선장은 여객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정항로 기상, 본선의 감항성, 화물종류, 적하상태 등을 종합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한다.

② 선장 및 기관장 또는 선장 및 기관장이 지정한 자는 운항 중에 매 시간당 1회 이상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비상 탈출경로 등 특수설비
2. 화재예방
3. 수밀문, 선수문 등 수밀설비 이상 유무
4. 화물 적재상태
5. 여객 안전 확보 상태
6. 기관 작동상태 등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제한, 악천후, 협수로 통항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항해에 철저히 임하여야 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항·출항시 및 항계 내에서 운항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관리청고시에서 정한 속력 준수 )
2. 시계 불량 시 협수로, 사고다발 해역을 통과할 경우
3. 운항 중 돌풍 등 해상기상이 악화되어 감속운항이 필요한 경우

④ 선장은 승무정원에 따라 항해 중 적절한 선교당직 및 기관당직 인원을 배정한 항해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항해안전 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항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운항항로

항로	출발지 (기점)	기항지	종착지 (종점)	항해 속력	항해 거리	운항 시간	비고
제주-완도	제주	하추자 (신양항)	완도	14노트	65마일	5시간	주항로
제주-완도	제주	-	완도	14노트	54마일	3시간50분	직항항로
제주-완도	제주	-	완도	14노트	54마일	3시간50분	기상악화시 우회(북서)
제주-완도	제주	-	완도	14노트	54마일	3시간50분	기상악화시 우회(북동)

## 2. 기점·종점 및 기항지의 위치와 그 상호간의 거리

기점(위치)	종점 또는 기항지(위치)	거리	비고
완도	하추자	38마일	
제주	하추자	27마일	

## 3. 항로상의 위험구역

가. 암초 및 저수심

나. 사격 및 훈련구역

- 1) R-149구역(33-44-45.0N, 126-13-00.0E)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 이내

다. 어선조업·어장 및 교통 밀집 구간

- 1). 완도항 진입전 A 부이 부터 완도항 방파제 까지
- 2). 완도항 TSS 부근

라. 관제구역·통항분리수역·특정해역

- 1) 제주항 관제구역 -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에 따른다.
- 2) 완도항 관제구역 - 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에 따른다.
- 3) 완도항 통항분리대 10번 부이 동서남북 해역

마. 기타 항해에 장애가 있는 지점

- 1) 해당사항 없음

#### 4. 선장이 위치보고를 해야 하는 지점

연번	보고지점	위도, 경도	비 고
1	제주항 출항	33°32'06"N, 126°32'39"E	제주운항관리센터, 제주VTS
2	제주항 관제구역 12마일	33°41'53"N, 126°27'40"E	제주VTS
4	추자 신앙항 출항	33°55'24"N, 126°20'50"E	제주운항관리센터
5	당사도 통과	34°02'46"N, 126°37'36"E	완도운항관리센터
6	완도항 입항	34°19'04"N, 126°45'43"E	완도운항관리센터, 완도VTS
7	완도항 출항	34°19'14"N, 126°46'40"E	완도운항관리센터, 완도VTS
8	당사도 통과	34°02'46"N, 126°37'36"E	완도운항관리센터
9	추자 신앙항 출항	33°55'24"N, 126°20'50"E	제주운항관리센터
11	제주항 관제구역 12마일	33°41'53"N, 126°27'40"E	제주VTS
12	제주항 진입 5마일	33°36'34"N, 126°30'23"E	제주VTS, 제주운항관리센터 (입항전보고)
13	제주항 입항	33°31'36"N, 126°32'34"E	제주VTS, 제주운항관리센터 (접안완료보고)

#### 5. 「선원법」 제9조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구간

구 간	위 치
가. 항구를 출입할 때	1. 완도 A부이 부근 2. 추자 5마일 부근 3. 제주 5마일 부근
나.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다. 선박의 충돌·침몰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라.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1) 안개, 강설(降雪) 또는 폭풍우 등으로 시계(視界)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 또는 좌초의 우려가 있는 때	
2) 조류(潮流),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선박의 침로(針路) 유지가 어려운 때	
3) 선박이 항해 중 어선군(漁船群)을 만나거나 운항중인 항로의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는 때	
4)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곤란하게 된 때	

#### 6.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안전운항을 위하여 감속운항을 하여야 할 경우

7. 태풍 내습 시 또는 기상악화 시 선박의 피항지

가. 태풍 내습 시 :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생일도 서쪽과 신지도 동쪽 지점, 추자 신앙항)

나. 기상악화 시 :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전한 장소를 피항지로 선정(완도항, 제주항, 추자 신앙항)

8. 정기적으로 교행(交行)하는 다른 선박현황

선박명칭	교행시간	교행위치
산타모니카	09 : 40	제주항 북방 10마일 부근
산타모나카	17 : 00	추자 신앙항 동쪽 부근

※ 선장은 본선과 정기적으로 교행하는 다른 선박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안전운항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선장은 신앙항 입.출항시 신앙항의 방파제부근 및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교행이 예상될 경우 다른 선박과의 교행을 피하도록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9. 항로도에 관한 사항

가. 운항항로에 대한 항로 등이 표시된 해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 「선박설비기준」 제93조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

나. 해도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해도를 최신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하여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제원, 운항구역, 기상조건, 복원성 등을 감안하여 출항 및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에 따른 출항·운항정지 기준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관련한 별표 10 “선박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항로의 해상상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정지하여야 한다.

풍 속	파 고	가시거리
최대 14m/s 이상	유의파고 2.5m 이상	1km 이내

3. 선장은 돌풍 등으로 실제 당해 항로의 기상상태가 여객선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거나 회항, 피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항관리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여객선이 운항 중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악화된 경우(시정 1km 이내)에는 안전한 곳에 임시 정박하여야 하며, 임시정박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견시원 배치, 감속(안전속력 유지), 항해등 점등, 무중신호 취명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5. 운항관리자가 안전운항에 저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운항을 중지하여야 한다.
6.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 따른다.

제18조의2(야간항해) ① 사업자는 야간운항(일몰 30분후 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중에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조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사 및 선장은 운항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어장, 교각 등 항로상 장애물 식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2. 기항지 접안시설과 선박에 설치된 야간조명설비의 상태

③ 선장 및 항해사는 야간운항 동안 선교 내 2인 이상의 항해당직체제를 유지하고, 육안 및 레이더를 통해 타 선박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제19조(입항·출항 시 업무) ① 선장은 출항 전 승선하여야 하는 선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한다.

② 선장은 출항 전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③ 선장은 출항 시 임시승선자를 포함한 본선에 승선한 모든 인원수를 최종 확인하여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④ 선장은 「선원법」 제7조에 따라 출항 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1.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여부
2. 선박에 화물(전기자동차, 위험화물 등 포함)이 실려 있는 상태
3.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의 구비 및 상태
4.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5.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6. 비상배치표 및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 숙지상태
7.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 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고, Go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⑥ 선장은 합동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안전 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치를 요청받은 안전 관리책임자(선박소유자 포함)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입항 전 계류시설에 선박을 접안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안전관리책임자나 영업소 또는 대리점이나 운항관리자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선장 및 기관장은 입항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조타장치
2. 항해장비
3. 기관기기 운전 상태
4. 선수문 등 이상 유무
5. 갑판기기

⑨ 선장은 선박의 입·출항시 선교에 최소한 항해사 또는 기관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0조(통신업무) ① 선장은 운항관리센터와 교신상태를 유지하고, 출·입항 시 및 항로도에 표시된 위치보고장소 통과 시 운항관리센터에 출·입항 사실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별표2]에 따른 보고사항을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종류	보고시기	보고내용
출항보고	출항후 10분 이내	1. 출항시간 및 출항항 2. 선원수(승선해야 할 승무원의 승선 여부) 3. 승선인원, 하선인원 및 최대승선인원 초과 여부 4. 화물 적재량(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가. 화물 나. 차량 5. 위험물종류와 그 수량 6. 도착항 및 도착예정시간(ETA)
입항보고	입항 10분 전 또는 입항완료 직후	1. 입항(예정)시간 및 입항지 2. 이상 유무
위치보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위치보고지점 도착 시	1. 시간 및 위치 2. 현지 항로의 기상 3. 항로의 상태
출항 또는 운항중지 보고	출항 또는 운항할 수 없는 경우	1. 시간과 위치 2. 사유
그 밖의사항 보고	비정상적인 운항이 발생된 경우	1. 시간과 위치 2. 그 내용
	항해 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원인이 있을 경우	1. 시간과 위치 2. 그 내용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 안전운항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1. 전달받은 시간 2. 그 사실 내용
	여객의 정원승선으로 중간기항지(寄港地)의 여객을 수송할 수 없게 된 경우	1. 여객정원수와 현 승선 여객 수 2. 중간기항지 예상 승선 여객 수

③ 선장은 「선원법」 제14조에 따라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쳤을 때에는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완도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진·출입시간 보고 시에는 관제구역 내에서는 “채널12(제주), 채널10(완도)”, 관제구역

외에서는 "채널16"으로 교신한다.

⑤ 선장은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여객업무) ① 회사는 대표담당자로 하여금 승선권 발행 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2 회사는 대표담당자로 하여금 대표 시 여객에게 전기자동차에 사고·충돌 이력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선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선적권 발행 시 전기자동차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전기자동차 식별 표지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식별 표지 부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식별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여객의 승선 시에는 담당직원을 승강대 입구에 배치하여 여객 신분증 및 승선권을 확인 후 승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여객의 승·하선은 승강대를 통하여야 하며, 선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승강대를 점검하고 여객이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여객의 승·하선 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안전조치 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여객의 승·하선 시에는 본선 선원 및 선사 육상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선장은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으며, 승선인원은 선장이 지정한 자가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⑦ 선장은 운항관리자가 없는 기항지의 경우 본선 선원 중 여객안전관리선원을 지정하여 여객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객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여객선이 운항중일 때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선원이 여객 및 선내 특이사항의 발생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상악화 등 운항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한다.

⑨ 「해운법」 제21조의2 제5항에 따라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간 보관(전산매표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승선권 관리책임자는 수시로 보관장소 및 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⑩ 선장은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를 제외한 차량 내 승객은 하차 후 승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선원은 화재, 충돌, 퇴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선장의 지휘에 따라 여객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비상탈출구 위치 및 대피 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이행
2. 담당구역의 여객 대피 안내

⑫ 선장은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치 및 확인한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제한구역」, 「출입금지」, 「통제구역」, 「통행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촉수엄금」 또는 「손대지 맙시다」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3. 계단입구나 출입문 높이가 낮은 객실 등에는 「머리조심」 표지판을 부착한다.
4. 선내 편의시설(자판기, 정수기 등)의 고정상태를 확인한다.
5. 항해 중 선원으로 하여금 여객구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수시로 순찰시켜야 하며, 법령 및 운송계약에서 정한 여객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6.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등 특별보호여객의 현황 및 탑승 위

치를 파악한다.

⑬ 선장은 항해 중 여객이 화물구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여객 준수사항의 전달) ① 선장은 출항 후 빠른 시간 내에 모니터 및 선내 방송시설을 이용하거나 선원의 직접 시범 등을 통하여 여객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기상상태
2. 출항 전 점검결과 내용
3. 구명조끼 등 사용법
4. 항행시간 및 입·출항 시 예정 시간
5.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여객안전에 관한 사항

②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의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2. 선원의 허락 없이 작동금지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설비 및 장치에 대한 접촉금지
3. 선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음주·가무 등의 금지
4. 선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금지
5.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6.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금지
7. 선박운항관리자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8.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은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금지

③ 선장은 여객실, 통로 등 여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구명조끼 착용법
2. 비상대피도면 및 비상탈출구 위치와 비상탈출요령
3. 구명조끼, 구명설비 및 소화기 보관장소

4. 각 여객실의 정원

5.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제23조(화물관리) ① 차량, 화물의 적재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의 적재한도 : 467.88톤

가. 차량의 최대 적재 수

차량종류		총중량(TON)	적재대수	비 고
승용차	SMALL	67.81	16	총 45 대
	MIDDLE		18	
	LARGE		11	
25톤 트럭		467.88	12	1대 최대중량 : 38.99톤
18톤 트럭		368.88	12	
6M3 믹서 트럭		445.40	17	
20KL 탱크로리		388.05	15	
5톤 트럭		190.44	18	
25톤 덤프트럭		467.64	12	
버스		153.72	12	
펌프카		118.23	3	
트레일러		310.88	8	

단,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해당차량의 총 중량이 승인받은 차량의 총중량의 범위 이내이고, 고정방법과 고박강도 등이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 등은 이를 준용하여 적재할 수 있다.

나. 일반화물의 최대적재중량 : 해당사항 없음

2. 최소 평형수 적재중량 : 44.30톤 ( NO.7 WBT P&S )

② 차량 및 화물의 고박장치 비치수량은 다음과 같다.

품명	수량	파단력/ 안전하중(S.W.L)	용도	보관장소
고박용 밴드	216	2.0톤/0.5톤	승용차 고박용	차량갑판
고박용 밴드	146	10톤/2.5톤	화물차 고박용	차량갑판



- ③ 선장이 일반화물 및 차량화물의 적재로 인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인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적재방법은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선장은 적재화물(차량, 화물)의 종류, 수량을 확인하고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적재 시 선내 작업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물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그 외의 장소(갑판, 통로)에는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량 선적 후 차량은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화물은 적재한도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출항 10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을 완료하고 출항직후 선수램프를 폐쇄한다. (차도선형 카페리 특성)
  6. 선장은 화물고박장치도(별첨 : 차량적재도)에 따라 일반(차량)화물의 적재상태 및 복원성을 확인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출항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o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차량간격은 600mm 이상이 되도록 적재한다.
    - 나. 차량구역 입구에는 차량적재도, 적재중량, 적재대수, 차량 적재 시의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다. 차량 갑판 내의 소방설비, 출입구, 계단 주위의 1m 이내 및 통로에는 보호띠를 설치하거나 구역을 표시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라. 기타 사항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및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7. 선장은 여객선 운항 중 선원이 차량, 화물의 고박상태 등 이상 유무를 매시간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8. 여객선 운항 중 전기자동차(이외 전기자전거 등 전기배터리를 동력원

으로 하는 이동수단 포함)의 배터리 충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복원성 및 복원성 기록관리)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선박안전법」 제28조에 따라 여객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복원성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화물(차량)적재도를 차량 갑판상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복원성 자료를 유지·관리하여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그 사본 각 1부를 운항관리센터(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험물 등의 취급) 위험물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위험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해당 위험물(휴대품 포함)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위험물 기타 여객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적재하지 아니한다.

3. 여객이 휴대한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에 한하여 적재가 가능하며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이 수거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적재차량이 공(空)탱크인 경우 청소증명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가스안전증명이 있으면 선적할 수 있다.

5. 적재관리 책임자는 선장이 지정하며, 선장은 선내 적재장소를 지정하여 표시하고 일반화물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위험물 관리자는 선장으로 지정 한다.

제26조(정박 및 계류) 선박의 정박(계류) 시 선장은 아래 사항을 최종 확

인 후 필요시 정박당직자를 배치한다.

1. 접안 장소와 수심, 선박의 흘수, 고조와 저조의 시각과 수위
2. 계선 결속상태, 닻의 배치와 닻줄의 길이
3. 주기관의 상태 및 비상 시 사용 가능성
4. 선상에서 수행되는 작업, 선적되거나 남아있는 화물의 상태 및 양, 배치
5. 선저폐수와 평형수 탱크의 양
6. 표시되어 있는 신호 혹은 등화
7. 선박에 남아 있는 선원의 수와 재선 중인 그 밖의 자의 현황
8. 특별히 요구되는 항만규칙
9. 선장의 당직지침과 특별 지시사항
10. 비상상황 발생 시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만당국을 포함한 선박과 육상의 이용 가능한 통신방법, 상륙자 비상소집 방법
11. 기상상태
12.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타 사항

제27조(선내 작업안전 관리) ① 선내 작업의 안전성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 선장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밀폐구역 작업
2. 고소 작업
3. 여객승신구역 작업
4. 선박의 수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5. 기타 선장이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③ 항내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 시행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선박 수리의 허가 등)에 의거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 제8장 비상상황 대응

제28조(사고처리 시 준수사항) 선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
2. 사고 시 사고처리 업무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시행할 것
3. 사태가 낙관적이어도 항상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강구할 것
4. 선장의 대응조치 및 지시사항을 따를 것
5. 선장 및 선원은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지 말 것
6. 육상근무자는 육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제28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선장은 운항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응) ① 선장은 다음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선원들의 임무, 소지품, 배치위치를 포함한 선내 비상부서배치표를 작성하여 조타실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반복 훈련으로 선원에게 주어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며, 제반사항을 지휘함으로써 비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1. 화재
2. 충돌, 좌초, 전복
3. 조타기 고장
4. 기관 고장(추진력 상실 포함)
5. 인명관련 비상 사고(퇴선, 익수자 발생 등 인명사고)
6. 해양오염 등

②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한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나타낸 도면 또는 그림, 비상 신호, 구명기구의 비치장소, 여객행동요령 등을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전 시에도 선내에서 대피 장소까지 탈출로를 쉽게 식

별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를 표시하여야 한다.

( 비상소집장소 : BRIDGE-DECK 선미측 / MES 탑승장소 : 1번~4번 )

③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즉시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동원하여 인접한 VTS 및 구조기관에 구조요청을 한 후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조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자동차가 선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선적 여부와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인지 여부 등 전보를 포함하여 구조요청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화재 발생 시 화재 규모, 선박 위치, 소화지원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긴급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구조기관의 지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우선한다.

⑤ 선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 기적 또는 사이렌을 이용하여 대피지시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장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상상황			퇴선시			
여객구역	차량구역	기관구역	1번MES, 1번사다리	2번MES, 2번사다리	3번MES	4번MES
1항사 (여객담당)	갑판장 (차량담당)	기관장 (기관담당)	1항사 (2항사)	기관장 (1기사)	2항사 (갑판부원)	1기사 (2기사)
			1번,3번 구명뗏목 투하	2번,4번 구명뗏목 투하	5번 구명뗏목 투하	6번 구명뗏목 투하

※ 휴가 시 등 업무대행자지정

( 1항사↔2항사, 2항사↔갑판장, 갑판장↔갑판원, 갑판원↔사무원

기관장↔1기사, 1기사↔2기사, 2기사↔조기장 )

⑥ 선장 및 선원은 사고발생 시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사고확대 방지 및 여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구조기관 등에 즉시 구조요청을 한다.

**【비상상황 연락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640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센터) 064)766-2242,2542 완도해양경찰서 (상황센터) 061)550-2242 긴급재난신고번호 119	제주운항관리센터 064)759-9780 완도운항관리센터 061)555-4028 ( VHF )	(주)송림해운 제주선박영업소 064)758-8889 완도선박영업소 064)758-8889
↑↓	↑↓	↑↓	
인 근 선 박 ( VHF )	↔ 송림블루오션호 (VHF, 전화) ↔	↔ 해경 및 해군함정 인근 VTS (VHF, ) ↔	

**【비상조직도 및 임무】**



2. 비상배치표에 따라 사고대응 및 수난구호기관의 구조협력과 안전지시 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양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인근병원 응급실 등 의료기관과 비상연락방법을 확보한다.

가. 제주 한마음병원 응급실(전화번호 064-750-9119)

나. 완도 대성병원 응급실(전화번호 061-553-1234-119)



4. 선장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 시 사고처리에 대한 증거 확보 및 현장을 보존한다.
5. 선장은 사고의 내용 및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며 입항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고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30조(피해보상 등의 조치) ① 회사는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29조제5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책임자, 비상대책위원장을 계통으로 하여 피해보상반을 운영하고, 여객·선원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등과 관련한 피해보상 조치를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및 훈련 등) ① 여객선의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교육(선원 및 육상근무자 포함) 등을 실시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 및 육상근무자에 대한 안전운항, 해양사고방지 교육의 실시 방법, 실시 시기, 실시 장소, 강사 확보 방법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원 및 육상근무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3. 선장은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계획을 토대로 선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4.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선원 및 기타 승선자의 휴식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② 선장은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선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부서배치표를 게시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비상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에 관한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한다.

- ③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사고 및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점검에 적극 참여한다.
- ④ 선박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시행주기는 [붙임11]과 같다.
- ⑤ 카페리선박의 경우 제4항에 따른 퇴선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분기1회 이상 승객을 참여시켜 훈련을 실시한다
- ⑥ 선원 법정교육은 [붙임7]과 같이 실시한다.

## 제9장 선박의 점검·정비

- 제32조(선박의 안전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불가피한 경우에는 선장 또는 기관장이 위임한 자)은 운항관리자와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에 따라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을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항 전 점검 실시 결과 결함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조치 후 출항하여야 하며, 감항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함사항으로 즉시시정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두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여객선 정기점검은「해운법 시행규칙」제15조의2에 근거하여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매월 실시하며,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례·특별점검·노후여객선 특별점검은 별지 제3호부터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운항관리자가 시행하는 점검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장 및 기관장이 입회하여 수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동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여객선 정기점검표에 따라 매월 선박시설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센터와 관계기관 및 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입회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기한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점검기관에 증빙자료(서류 또는 사진 등)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은 [붙임13] 과 같다.

제33조(육상설비 점검)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 접안시설, 승객 탑승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미비사항 발견 시 자체정비 또는 불가피한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34조(선내 정비 및 점검 등) ① 선체 및 갑판은 입거 시 보수정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실 및 기기류는 [붙임9]의 “선박계획정비표”에 의거 점검 및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갑판 보기류는 접·이안 시 및 하역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입항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 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계선설비의 작동부에 대해 윤활유(그리스) 주입 등의 정비작업 및 고착부에 대한 낙청·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창고는 정리정돈하고 거주구역 및 여객구역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항해장비 및 통신설비에 대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항해등, 기적의 작동 상태 및 종 등의 비치상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구명, 소방설비의 비치상태 및 성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 항해 중 중요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체정비 완료한 경우 고장개

소, 긴급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여 차기 정비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장비 및 시설 등의 점검 후 여객선의 안전운항과 여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유류 관리) ① 기관장은 유류 수급 전 유류 잔량 확인, 유류 수급 설비 및 비상설비 점검, 비상연락수단 확보, 해양오염방지자재 배치, 당직인원 배치 등을 통해 유류 수급을 위한 준비를 한다.

② 기관장은 유류 수급 중 주기적으로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상설비 및 비상연락수단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유류 수급 후 유류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일지 및 기름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 수급 시 해상에 오염물질이 누설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오염물질을 확인한 경우 즉시 유류 보급선과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알리고, 전 선원은 해양오염에 대한 비상대처활동을 수행한다.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오염방지자재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장 자료관리

제36조(문서관리) ① 선장은 선내 문서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관리
2. 수발문서의 최종 승인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 등 문서의 총괄관리

#### 4. 선내문서 및 기록의 통제

#### 5. 승선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자료 등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 및 관리 철저

② 선내 부서별 문서관리담당자는 1등항해사, 1등기관사, 사무장으로 정하며 부서 내 문서·기록의 수발신 및 작성·검토, 보관 및 폐기, 기록 관리의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③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문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문서목록을 작성하고 적절한 환경 하에서 쉽게 검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서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회사문서의 관리책임자로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항관리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자료 및 관리
2. 수발문서의 관리자로서 문서내용의 검증
3. 안전관리문서 및 외부문서등 문서의 총괄관리
4. 회사문서 및 기록의 통제
5.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폐기

제37조(문서생산 등) ①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은 아래의 원칙으로 수행한다.

1. 작성 : 업무 성격에 따른 실무담당자/책임자
2. 검토 : 부서장(부재시 최상위 직급자)
3. 승인 : 선장 / 사장

② 선장은 문서 내용에 따라 회람, 교육 또는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서는 선원에게 공람 조치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③ 선내 문서는 항상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하고, 회람용 문서는 전 선원

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38조(문서관리대장) 여객선에는 붙임 문서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서류 및 증서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의 폐기) ① 선장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무효화된 문서 및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폐기여부를 결정하여 폐기하고 회사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효된 문서를 법적/지식보존의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할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 및 선장은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해도관리) ① 선장 또는 항해사는 항행통보를 수령한 후 해당 항로 해도 및 수로서지에 대한 소개정을 실시하고, 발행 연도말 기준으로 1년간 보관한다.

② 선장 또는 항해사는 본선에서 보유 중인 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도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여객선 이력관리장부)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의 도입 및 매매
3. 선박 도입 후 운항항로 이력
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결과
5. 해양사고 이력(「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6. 선박 개조 이력(「선박안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조허가 대상을 말한다)

② 선장은 여객선 이력관리 장부와 관련 근거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하

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41조2(여객선 안전정보공개) ① 사업자는「해운법」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여객선 안전정보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여객선의 선명, 선종, 선령, 총톤수, 여객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및 운항속력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사고이력(「해사안전법」제57조에 따라 공표되는 해양사고를 말한다)

4. 「해운법」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다만, 여객운송사업자의 내부정보 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5. 「해운법」제19조제1항제11호 부터 제18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내용

② 사업자는「해운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3서식의 여객선 안전정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반기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11장 운항관리규정의 확인, 검토 및 평가 등

제42조(운항관리규정 내부심사)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운항관리규정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 등에 대한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항관리자의 정기적인 이행 상태 확인 전에 안전관리부서에 대한 내부심사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규정에서 요구하는 절차·조건의 누락
2. 사고(선체, 기관 및 화물사고, 인명손상), 기기 및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해 또는 운항 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
3. 지방해양수산청, 운항관리센터, 해양경찰서, 선박검사기관 및 기타 외부기관 점검 지적사항
4.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체계, 상태 등 부적합사항

② 부적합사항은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기한 내 시정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련기관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종결한다.

제44조(운항관리규정의 비치 등)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9의2호가목에 따라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심사를 필한 후 사용해야 한다.

제45조(규정의 적용) ① 회사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선박과 주된 사업소 및 영업소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여객이 이를 열람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항기준도를 선박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은 운항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선의 선종 별·톤수, 회사의 구조, 항만별 특성 등에 따라 가감·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대표자는 운항관리규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이 규정 이외의 기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붙임자료】

- [붙임 1] 운항항로도
- [붙임 2] 일반배치도
- [붙임 3] 인명구조장비도면 & 화재제어도
- [붙임 4] 비상탈출로도면
- [붙임 5] 차량적재도
-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붙임 7] 선원법정교육 목록
- [붙임 8]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붙임 9] 선박계획정비표
-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붙임 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붙임 13]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 현황
- [붙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 [붙임 15] 내부심사절차서
- [붙임 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 [붙임 17] 해상직원 인수인계서
- [붙임 18] 안전관리조직도
- [붙임 19] 위험물 운송적합증

# [붙임 1] 운항항로도

## 1항로 (제주-하추자-완도)



## 2항로 (제주-완도 직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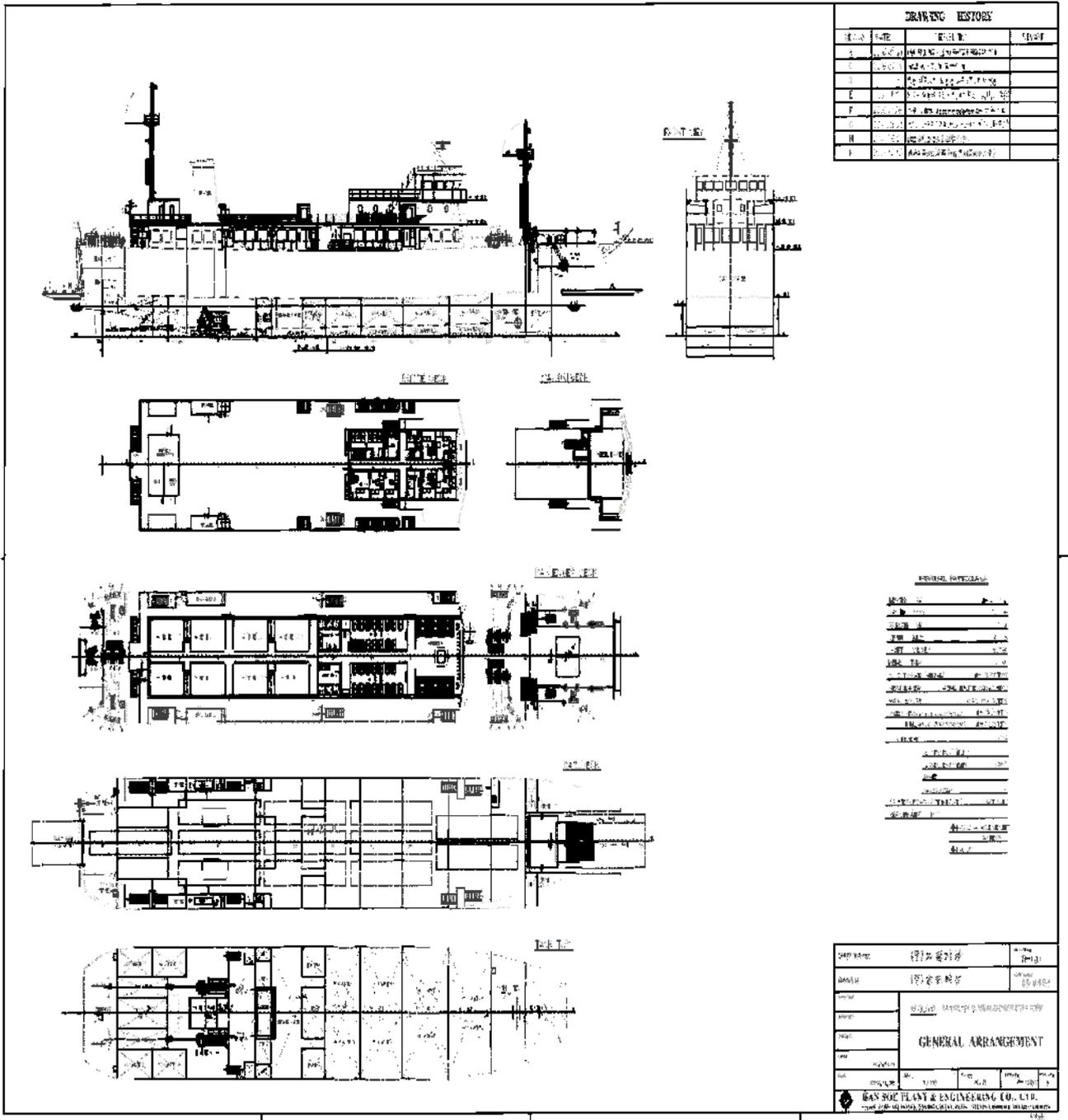
### 3항로 (제주-완도 직항 / 기상악화 - 북서풍관련)



### 4항로 (제주-완도 직항 / 기상악화 - 북동풍관련)



# [붙임 2] 일반배치도



[붙임 3] 인명구조장비 도면 & 화재제어도 [ Fire Control Pla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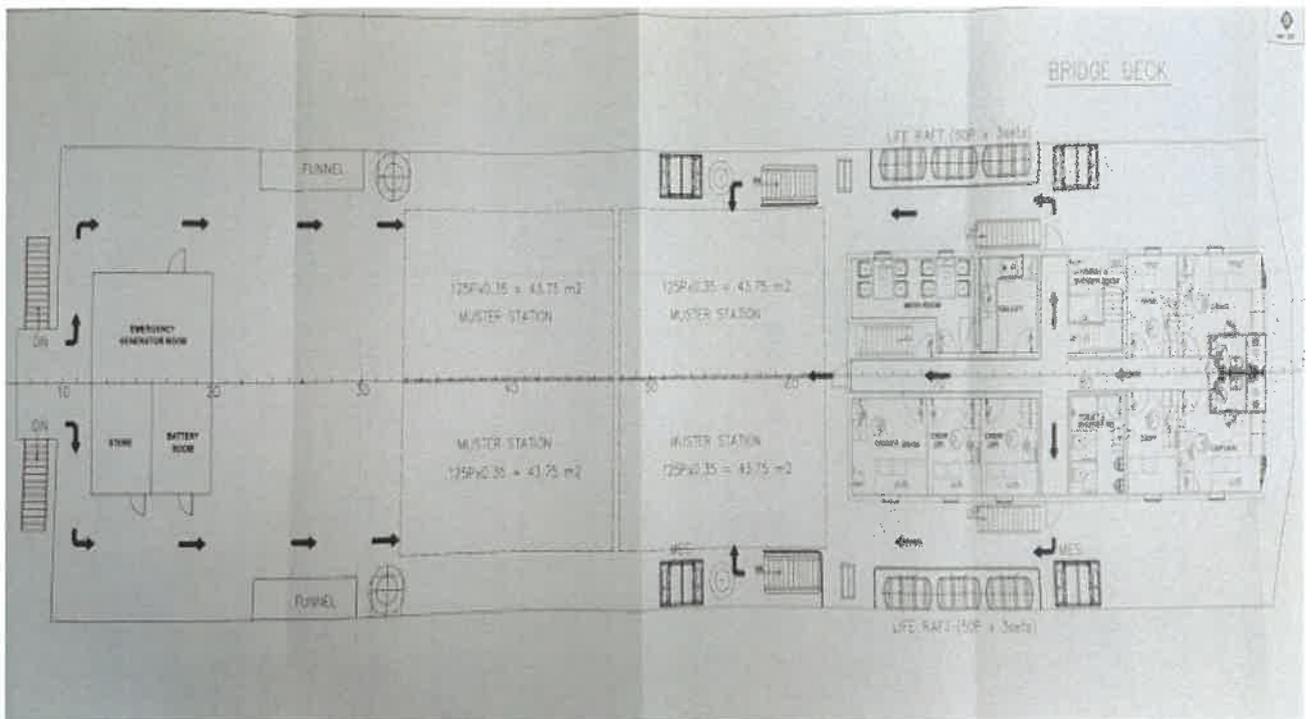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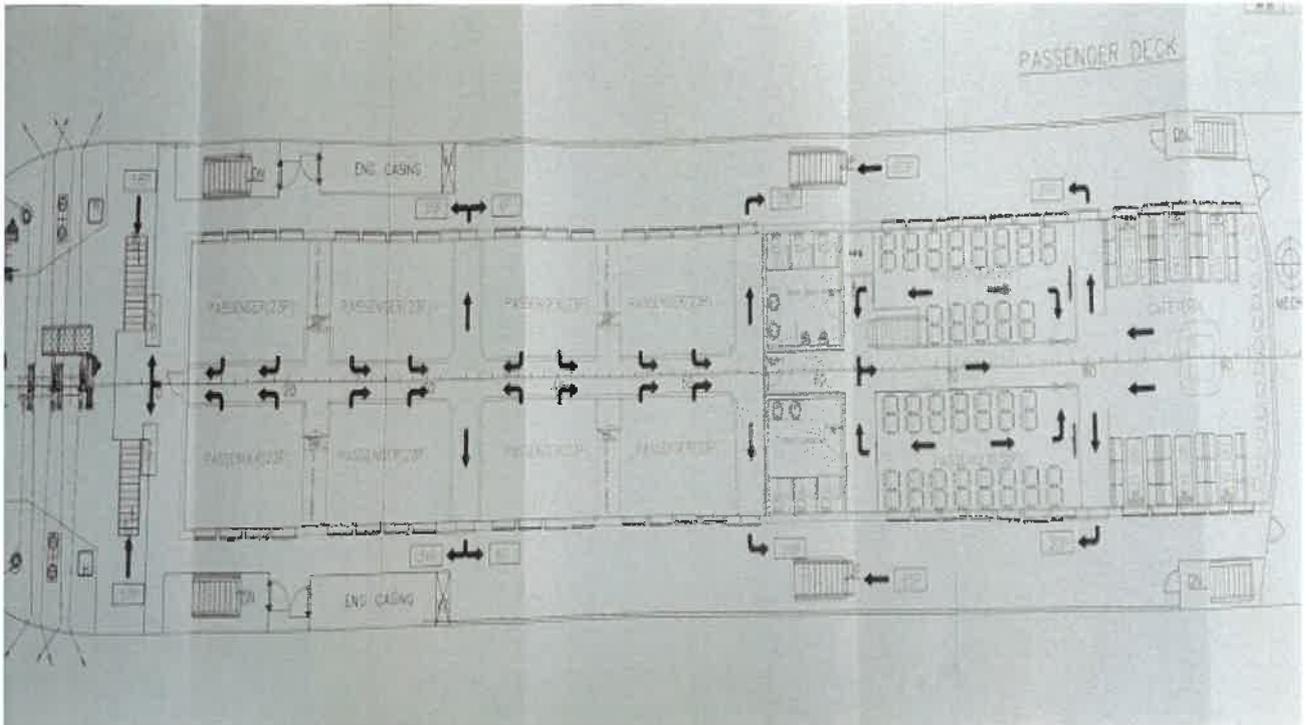
## SAFETY & FIRE CONTROL PLAN

DRAWING HISTORY			
NO.	DATE	DESCRIPTION	BY
1	2023.01.10	INITIAL DESIGN	김민준
2	2023.02.15	REVISION	김민준
3	2023.03.20	REVISION	김민준
4	2023.04.25	REVISION	김민준
5	2023.05.30	REVISION	김민준
6	2023.06.15	REVISION	김민준
7	2023.07.20	REVISION	김민준
8	2023.08.25	REVISION	김민준
9	2023.09.30	REVISION	김민준
10	2023.10.15	REVISION	김민준
11	2023.11.20	REVISION	김민준
12	2023.12.25	REVISION	김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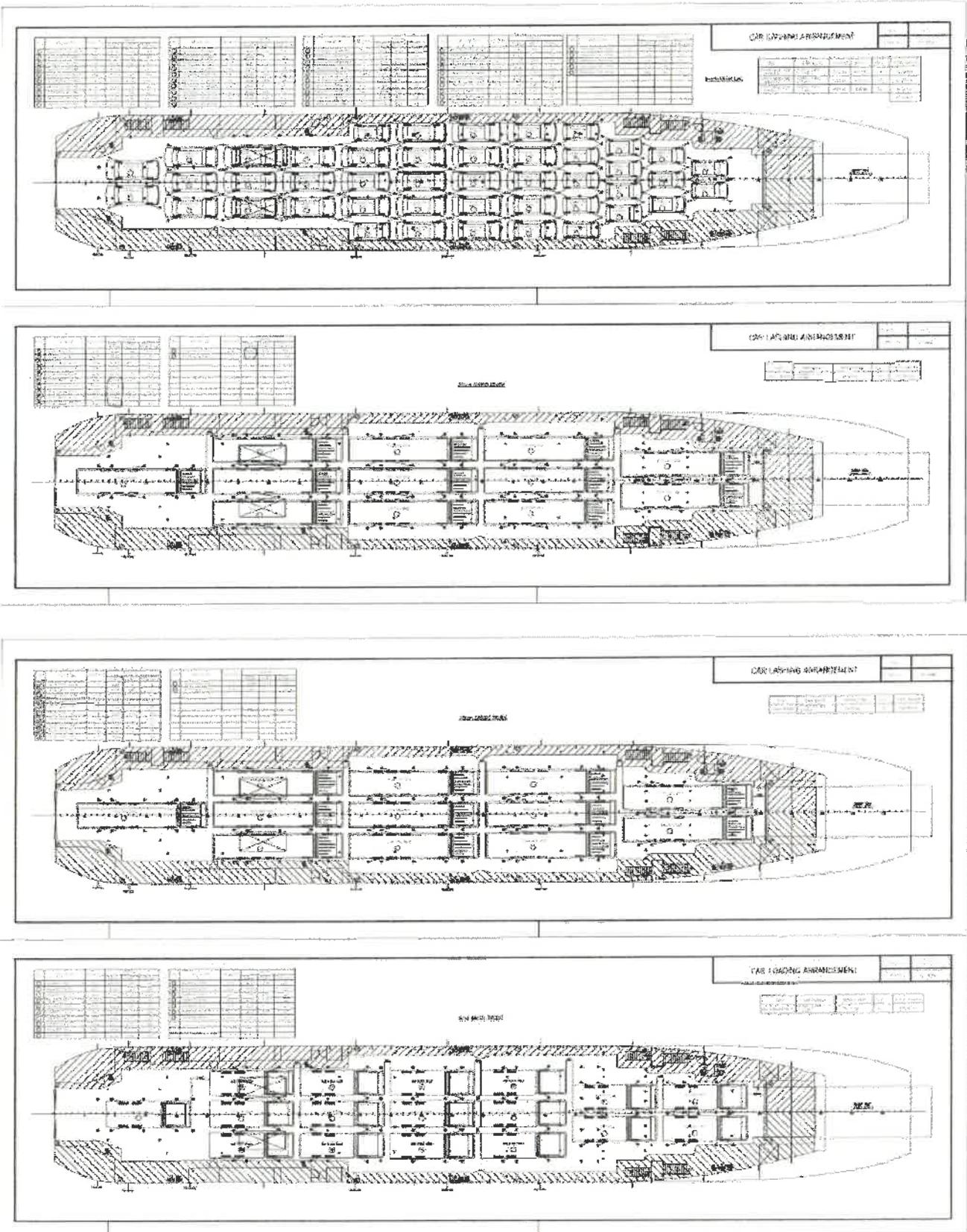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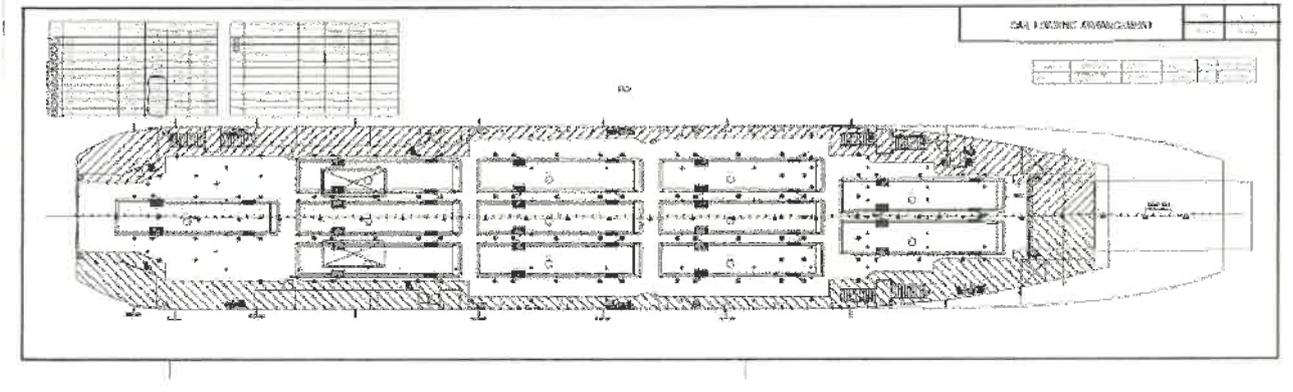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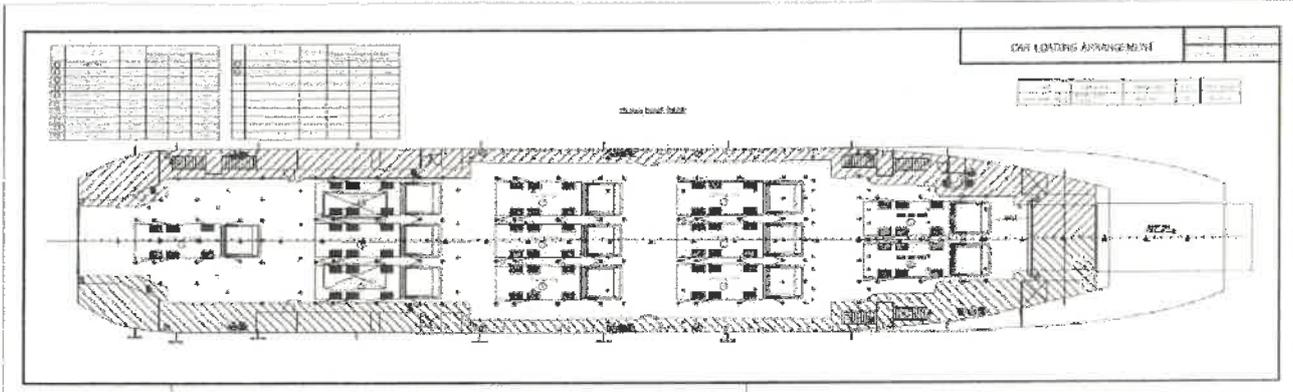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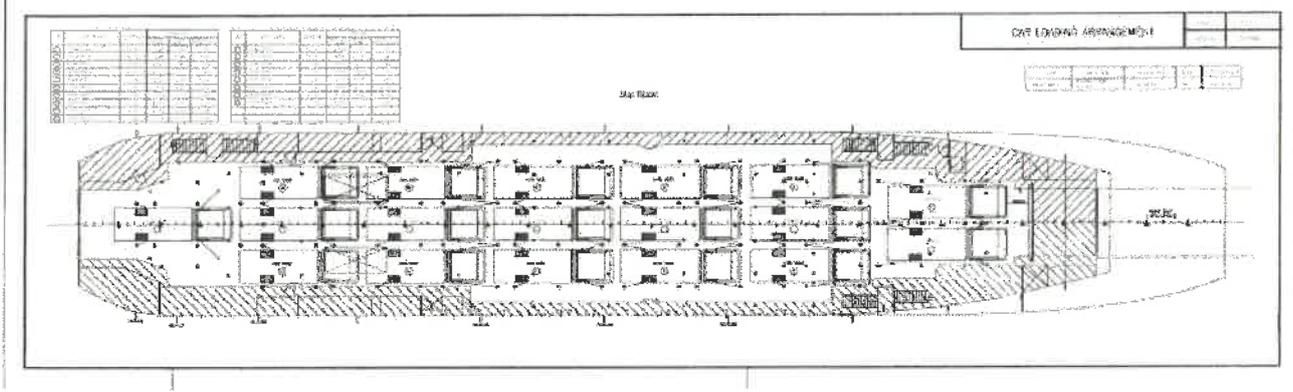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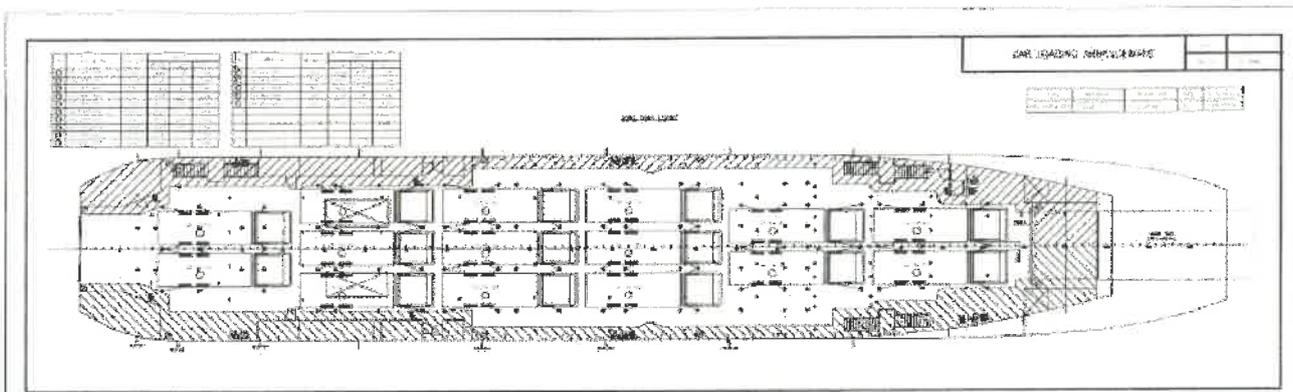
DECK	NO.	NAME	TYPE	LOCATION	STATUS
DECK 01	01-01	Lifeboat	1	Deck 01, Starboard	OK
	01-02	Lifeboat	1	Deck 01, Port	OK
	01-03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01-04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01-05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01-06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01-07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01-08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01-09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01-10	Fire Extinguisher	ABC	Deck 01, Corridor	OK
DECK 02	02-01	Lifeboat	1	Deck 02, Starboard	OK
	02-02	Lifeboat	1	Deck 02, Port	OK
	02-03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02-04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02-05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02-06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02-07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02-08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02-09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02-10	Fire Extinguisher	ABC	Deck 02, Corridor	OK
DECK 03	03-01	Lifeboat	1	Deck 03, Starboard	OK
	03-02	Lifeboat	1	Deck 03, Port	OK
	03-03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03-04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03-05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03-06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03-07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03-08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03-09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03-10	Fire Extinguisher	ABC	Deck 03, Corridor	OK
DECK 04	04-01	Lifeboat	1	Deck 04, Starboard	OK
	04-02	Lifeboat	1	Deck 04, Port	OK
	04-03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04-04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04-05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04-06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04-07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04-08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04-09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04-10	Fire Extinguisher	ABC	Deck 04, Corridor	OK
DECK 05	05-01	Lifeboat	1	Deck 05, Starboard	OK
	05-02	Lifeboat	1	Deck 05, Port	OK
	05-03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05-04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05-05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05-06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05-07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05-08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05-09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05-10	Fire Extinguisher	ABC	Deck 05, Corridor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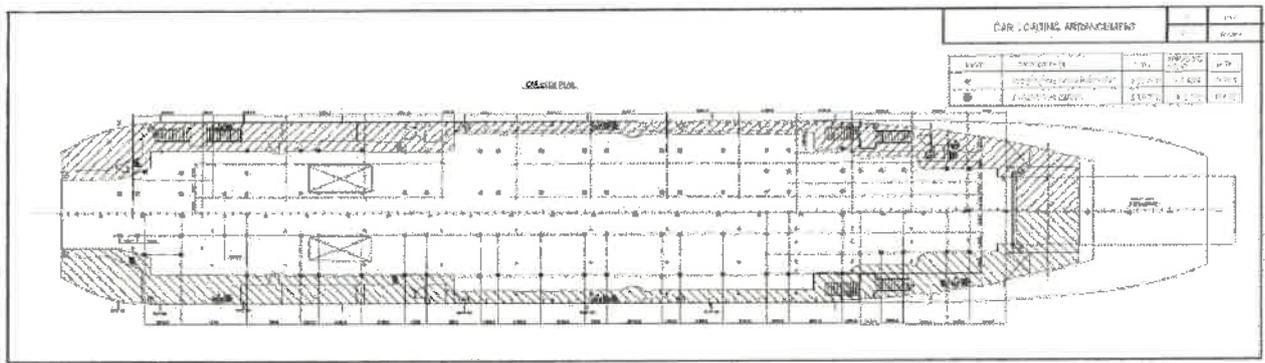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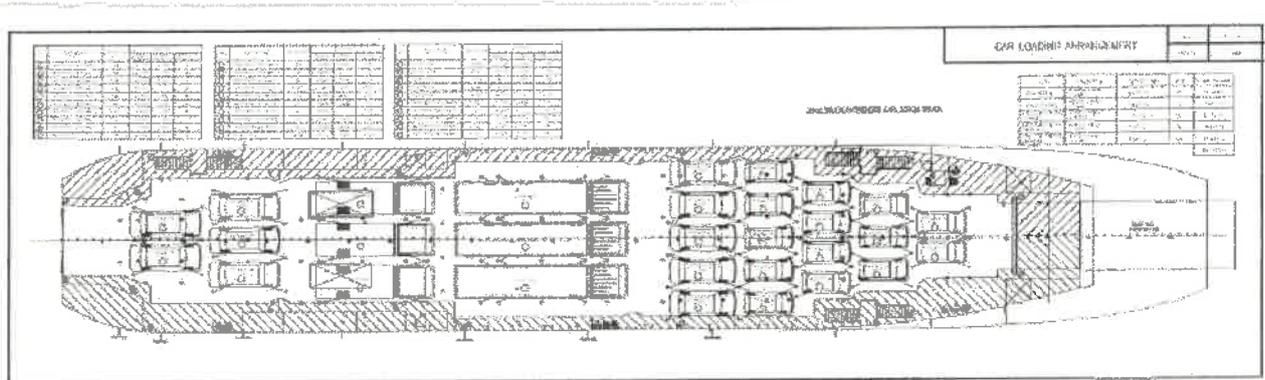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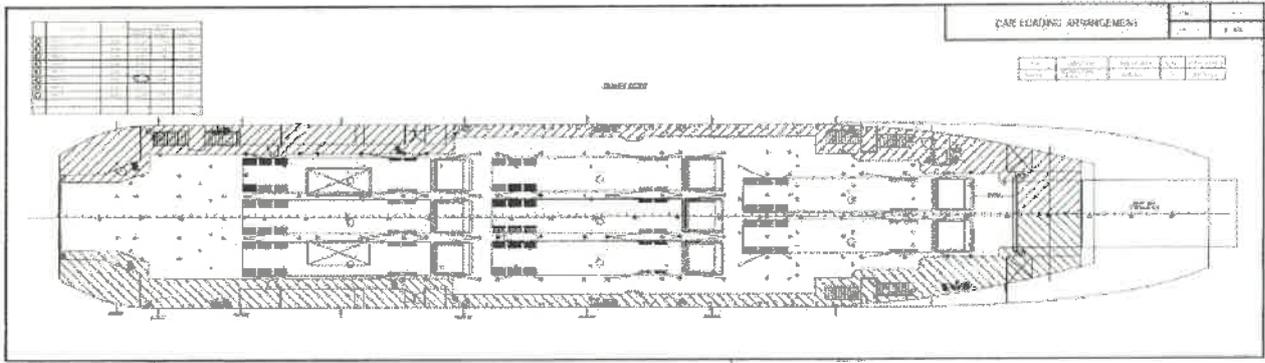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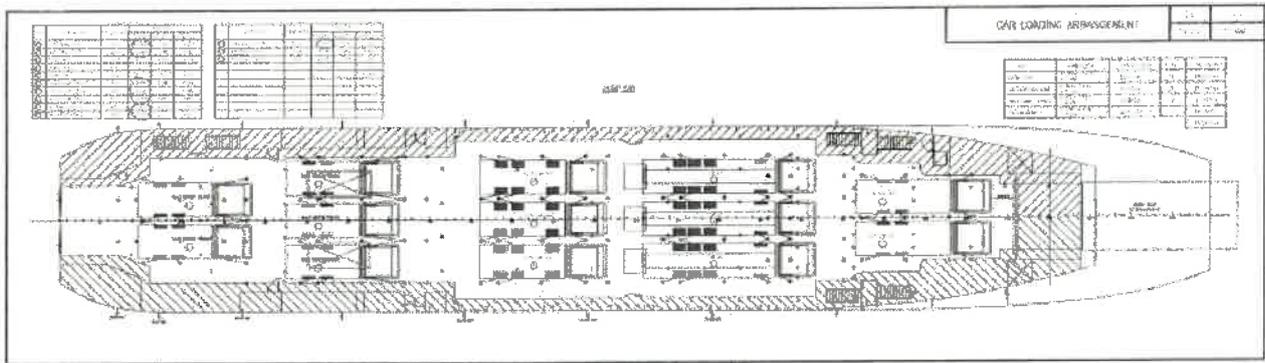
[붙임 4] 비상탈출로 도면



[붙임5] 차량적재도 [ Car Loading Plan ]







## [붙임 6] 선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는 위험물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제4조 [별표 10]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관련

분류	위험물	수량 및 질량
화약류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은 제외), 소형화기용 공포탄	200개
	소형화기용 실탄(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인 것)	400개
	수렵용 또는 스포츠용의 흑색화약 및 무연화약, 연화(완구용인 것)	1kg
	도화선	3kg
고압가스	소화기, 약품류	2개
	흡연용 가스라이터(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	10kg
부식성 물질	축전지	2개
	소화액(부식성인 것) 약품류	3kg
독물류	시약으로 사용되는 독물로 용기등급이 2 또는 3인 것	3kg
인화성 액체류	살충살균제류(액체로서 인화성 이고 독성인 것), 약품류	3kg
	도료, 가솔린, 등유	20kg
	흡연용 가스라이터(연료유가 주입된 것)	10kg
산화성 물질류	고순도표백분, 보통표백분	3kg
가연성 물질류	셀룰로이드	1kg
	안전성냥, 약품류	3kg
	감파, 나프탈렌, 유성가공종이, 섬유	5kg
	필름(니트로셀룰로오스베이스로서 젤라틴으로 피복된 것)	20kg
유해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5kg
<p>※ 비고 : 1). 수량 또는 질량은 1인당 휴대기준을 말하고, 질량은 용기 및 포장의 질량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p> <p>2). 위험물선박운송기준 [별표1] '위험물 목록' 의 적재격리요건 란에 적재방법 'D' 및 'E' 로 분류되는 위험물(휘발유 등), 화학류의 경우 적재방법 '03', '04' 및 '05' 로 분류되는 위험물(기준 제16조에서 정하는 화학류 제외)은 여객선 적재가 금지된 위험물이므로 여객선에 적재할 수 없음.</p>		

## [붙임기] 선원법정교육 목록

교육명	구분 및 교육기간	유효기간	관련법령
기초안전교육	4.5일/재교육 2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안전교육	구명정(재) / 3(0.5)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소화(재) / 3(1)일	5년	
	응급처치(재) / 3(0.5)일	5년	
	고속구조정 / 1일	5년	
	구명정+소화+응급(재) / 5(2)일	5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교육	정규 / 3일	5년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121조, 동법시행령 제92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재·보충 / 2일	5년	
레이더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 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레이더 / 2일	없음	
리더십 및 팀워크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리더십 및 관리기술직무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여객선교육	기초(재) / 2(1)일	5년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상급(재) / 4(2)일	5년	
여객선 직무교육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의료관리자 교육	자격취득교육 / 5일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보수교육 / 2일	5년	
GMDSS 직무인정교육 3/4급통신사	기사반 / 5일	없음	전파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전파전자 3급 통신사/5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전파전자 4급 통신사/3일	없음	
면허갱신교육	3급 이상 / 3일	5년	선박직원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4급 이하 / 2일	5년	
	통신 / 1일	5년	
당직부원교육	항해당직부원/5일 자동화선박 운항당직/1월	없음	선원법 제116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면허전환교육	3급 해기사/ 5일 4급 또는 5급 / 3일	없음	선박직원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4조의2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붙임 8]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1/2
년 월 일 시 분							출항	
선 명				선박번호				
항로 및 항해구역				항해예정시간		시간 분		
출 수	선수(船首): m, 중앙: m, 선미(船尾): m							
최대 승선인원 (선박검사증서)	명	여객	명	선원	명	임시 승선자	명	
실제 승선인원	(①+②+③+④+⑤)명		여객	(①+②+③)명	선원	④명	임시 승선자 ⑤명	
				대인 ①명				
				소년 ②명				
				유아 ③명				
화물의 적재한도 (운항관리규정)	M/T							
실제화물 적재중량 (화물집계표)	(a)+(b)+(c)M/T			차량화물	대	a M/T		
				일반화물	b M/T			
				컨테이너	개	c M/T		
위험화물 [차량 및 수하물(手荷物)]	위 치	종 류		수 량	보관형태	특징/비고		
	지정장소 (선수창고 등)							
	화물창							

※ 일반카페리선박에 한해 G<sub>0</sub>M 등 복원성계산서를 첨부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

##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2/2

선 명	선박번호	점검결과		비 고
점 검 사 항		예	아니오	
<b>1. 선장·기관장 및 운항관리자</b>				
가. 항해계획이 수립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해상기상 및 항행정보를 파악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운항관리규정상 법정승무원의 승선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선교 항해·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가? <input type="checkbox"/> 레이더 <input type="checkbox"/> 컴퍼스 <input type="checkbox"/> GPS <input type="checkbox"/> AIS <input type="checkbox"/> 음향측심기 <input type="checkbox"/> 항해등 <input type="checkbox"/> 조타기 <input type="checkbox"/> 선내 방송설비 <input type="checkbox"/> VHF <input type="checkbox"/> 기적 <input type="checkbox"/> e-Nav 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전자해도시스템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설비(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주기 및 발전기, 그 밖의 기기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 운전상태 또는 사용 준비 상태 확인 - 연료유공급탱크 채움 등 필요한 연료유 확보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기관실 내 위험요소는 제거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동불 고정 <input type="checkbox"/> 인화·발화물질의 이동보관, 격리, 제거 <input type="checkbox"/> 누수·누유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 선내 소화·구명설비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가? * 구명조끼, 소화기 등은 표본 점검 가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아. 통로 장애물 유무 확인 등 비상탈출로는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 선체상태, 만재흘수선 등을 통해 감항성을 확인하였는가? * 평형수 적재 가능한 일반카페리의 경우 복원성(GoM 등) 추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차. 화물구역의 화물이 안전하게 적재 및 고박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카. 선내 위험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 및 보관 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타. 여객명부 및 화물목록을 본선에 수령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파. 선원이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았는가? *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자에 한정하여 육안점검 등 시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2. 선장·기관장</b>				
가. 감관설비 등은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선설비 <input type="checkbox"/> 양묘(揚錨)설비 <input type="checkbox"/> 스리스터(Thruster)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설비(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 선박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예비품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 타기실 내 누수·누유 여부 및 밀지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라. 여객실 등 여객구역에 구명조끼 등 비품이 비치되어 있고 청결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마. 승무원이 각 해당 부서에 배치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바. 육상 작업원 등 망신자의 하선 및 수상한 자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결합사항 :				
유행관리규정에 따라 인명과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선 장 (인)</div>				
선장 등과 위 내용을 점검 및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운항관리자 (인)</div>				

주: 점검 후 결과란 “예”, “아니오” 에 √ 표시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표시한다.

**[붙임 9] 선박계획정비표**

## 선박계획정비표

○ (갑판부) 일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	점검항목	양호	불량	비고
1	주기관 및 추진기 작동상태 점검			
2	통신기기 작동상태 점검			
3	Radar 작동상태 점검			
4	Gyro Compass 작동상태 점검			
5	Speed Log 작동상태 점검			
6	Echo Sounder 작동상태 점검			
7	선내통신장비 작동상태 점검			
8	Public Address System 작동상태 점검			
9	CCTV & Video System 작동상태 점검			
10	기적 작동상태 점검			
11	항해등 & 탐조등 작동상태 점검			
12	항해일지 기록상태 점검			
13	통신일지 기록상태 점검			
14	조타기 작동상태 점검			
15	스러스트 작동상태 점검			
16	화재탐지장치 전원 & 작동상태 점검			
17	AIS 전원상태 및 동작상태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 (기관부) 일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No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비고
1	연료유 잔량과악			
2	각 기기 순환유량 점검			
3	기동공기탱크 압력점검			
4	배기온도 및 냉각수 온도점검			
5	냉각수량 점검			
6	각부 온도계 및 압력계기 점검			
7	배전반 각 계기점검			
8	냉,난방기 운전상태 점검			
9	스턴튜부 누수점검			
10	주,보기 엔진오일 상태점검			
11	기관실 조명상태 점검			
12	보일러 운전상태 점검			
13	L.O & F.O청정기 운전상태 점검			
14	제어공기 채습상태 점검			
15	바우스러스트 순환유량 점검			
16	공기압축기 운전상태 점검			
17	비상발전기 출력점검			
18	발전기 정격전압 상태점검			
19	각부 베어링 상태점검			
20	기어박스 작동상태 점검			
21	발전기 출력점검			
22	슬러지량 점검(오일 세퍼레이터 작동 경우)			
23	분노탱크량 점검, 배출구역 확인 기록			
24	연돌 배기가스 상태 점검			

# 선박계획정비표

○ (기관부) 주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점   검   항   목	1주	2주	3주	4주	5주
1	주기, 발전기 에어 필터 커버 청소					
2	기관실 펌프 메카니컬 실 누수 확인					
3	공기조화장치 펌프, 모터 베어링 구리스 주입					
4	소방 펌프, 모터 베어링 구리스 주입					
5	선내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					
6	공기조화장치 입구측 에어 필터 청소					
7	비상발전기 확인					
8	기관실 화재탐지기 작동 확인					
9	기관실 비상등 작동 확인					
10	냉동기 냉매(R-22)누설 확인					
11	조타기 유압펌프 누유 점검					
12	유수분리기 작동 확인 및 경보테스트					
13	보일러 버너 상태 점검					
14	기관실 비상탈출구 점검					
15	기관실 경보상태 점검					

## 선 박 계 획 정 비 표

○ (갑판부-1) 월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장비명	점검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화기	1 Handle 고정핀 상태 확인												
	2 작동상태 확인												
	3 비치 및 수량 확인												
고정식 소화장치 (Co2)	1 Cylinder 상태 확인												
	2 Line Air Pressure 확인												
	3 Alarm 작동상태 확인												
	4 작동지침서 부착 확인												
스프링 클러	1 압력상태 확인												
	2 Alarm 작동상태 확인												
화재 탐지기	1 내부 청결상태 확인												
	2 작동상태 확인												
비상 탈출구	1 위치표시 확인												
	2 조명상태 확인												
	3 내부 청결상태 확인												
aid Kid	1 구급약 비치 확인												

# 선박계획정비표

○ (갑판부-2) 월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장 비 명	점    집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객실의자	1	Cover 청결상태 확인											
	2	안전 벨트 상태 확인											
	3	의자 고정상태 확인											
화장실	1	해수 흡입구 상태 확인											
	2	Float Valve 상태 확인											
	3	Push Button 상태 확인											
	4	출입문 핸들 및 Locker 상태 확인											
객실 출입문	1	Door Handle 상태 확인											
	2	Door Locker 상태 및 주유상태 확인											
	3	Door 수밀 Rubber Packing 상태확인											
Windlass	1	Hyd. Oil Level 상태 확인											
	2	Hyd. Oil Filter 상태 확인											
	3	Power Switch 작동상태 확인											
	4	Brake & Band 마모상태 확인											
	5	Anchor & Chain & Wire 마모상태 확인											
	6	Anchor 고정 Turn buckle 상태 확인											
EPIRB	1	작동상태 확인											
	2	Case & 자동이탈장치 확인											
Radar Transpon- -der	1	작동상태 확인											
	2	고정상태 확인											
객실현창	1	Rivet 이완상태 확인											
	2	균열개소 확인											
비상등	1	비상등 식별표시 여부 확인											
	2	Lamp & Cover 파손 확인											
	3	Lamp 밝기 확인											
	4	작동상태 확인											
기름 기록부	1	작성상태 확인											
	2	폐유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폐기물 기록부	1	작성상태 확인											
	2	반출 확인서 부착 확인											

# 선박계획정비표

○ (기관부) 월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장비명	점    검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MAIN ENGINE	1	주기관 안전장치 점검											
	2	주기관 연료분사변 점검											
	3	주기관 흡,배기변 간극검사											
GEN. ENGINE	1	발전기관 안전장치 점검											
	2	보조기관 연료분사변 소제점검											
	3	보조기관 흡,배기변 간극검사											
PUMP	1	각 펌프모터,베어링 작동상태 점검											
	2	각 펌프 메카니칼셀 점검											
	3	소화펌프 및 스프링클러펌프 점검											
BOILER	1	보일러 버너 상태점검											
공조장치	1	냉 난방기 필터소제 및 점검											
	2	각 공조장치 에어컨,히타코일 상태점검											
비상발전기	1	비상발전기 및 비상공기 압축기 운전상태 점검											
공기압축기	1	공기압축기 흡입토출변 검사											
각종기기	1	갑판 유압라인 점검 및 펌프작동상태 점검											
	2	중간축 베어링 오일점검											
	3	스턴튜브 누수 점검											
	4	선외 선저변 상태검사											
	5	바우, 스톤 스트러스트 L.O 중력탱크 점검											
기타사항	1	전선 피복상태 점검											
	2	각종기기 윤활유 점검											
	3	연료유,윤활유 점검											
	4	연료유,윤활유 에어필터 소제점검											
	5	각부 파이프라인 누수,누설점검											
	6	비상탈출구 점검											
	7	슬러지 탱크량 확인 및 육상배출											



## 선박계획정비표

○ (기관부) 분기별 점검표

점검년월일 :           년       월       일

점검시간 :                      

점검자 직책 :                      성명 :                              서명 :

장비명		점  검  항  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Main Engine	1	주기관 베드볼트 및 너트점검				
	2	주기관 크랭크 챔바 개방점검				
	3	주기관 L.O & F.O 안전장치 점검				
	4	주기관 피스톤 핀 및 메탈간격조정				
	5	주기관 크랭크 핀 및 메탈간격조정				
	6	주기관 헤드 및 실린더 냉각수 통로 조정				
	7	엔진오일 교환 및 보충				
Gen. Engine	1	발전기관 베드볼트 및 너트점검				
	2	발전기관 크랭크 챔바 개방점검				
	3	발전기관 L.O & F.O 안전장치 점검				
	4	발전기관 피스톤 핀 및 메탈간격 조정				
	5	발전기관 헤드 및 실린더 냉각수 통로 조정				
	6	엔진오일 교환 및 보충				
COOLER	1	각 냉각기(L.O&F.O)아연점검 및 소제				
PUMP	1	각부 펌프 작동상태 점검 및 구리스 주입				
배전반 및 각 모터	1	배전반 및 각 모터절연저항 측정				
SEWAGE	1	오물처리장치 점검				
OILY WATER SEPARATOR	1	유수분리기 점검				
수밀문	1	기관실 수밀문 작동상태 점검				
비상등	1	비상등 점검				
연료유차단밸브	1	연료유 차단 밸브 동작상태 확인				
통풍장치 원격정지	1	기관구역 통풍장치 원격정지				
Damper	1	Damper 밀폐장치				
기타사항	1	주기관,발전기,각 기기, 보기류등 예비품 현황파악				
	2	킹스톤 벨브 및 습합조정				
	3	배터리 점검				
	4	베어링부 구리스 주입여부 점검				

[붙임 10] 비상부서 배치표

# 비상부서배치표

선 명 : 송 립 블 루 오 선 호

	퇴 선	소화	인명구조	비상조타	충돌 좌초	기관고장	해양오염 기름유출시	침수 전복
선장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총지휘 통신 : 관계처 연락
	TWO WAY, 선내중요서류							
1 항사	1번 MES 1번 구명뗏목 정장	현장 지휘 유성 폭발 물질 확인	현장 지휘 익수자 위치 파악	비상 조타 지휘 선교와 통신	현장 지휘 손상 구역 침수 여부 조사	선수, 필요시 투묘 준비	현장, 선체 및 각 탱크 측심, 유출 상황 파악	현장지휘 여객실 잔류인원 수색 및 구조
	TWO WAY ,EPIRB							
2 항사	2번 MES 2번 구명뗏목 정장 여객유도	여객 안정 및 피난 유도 대기 구호반	여객 안정 유도	여객 안정 유도	여객 안정 유도	여객 안정 유도	여객 안정 유도	여객 비상집합 장소유도
	SART, 해도, log book, 여객명부							
기 관 장	1번 비상사다리 5번 구명뗏목 정장 여객 유도	기관실, 화염으로 부터 전기 및 발하원 차단,CO2 작동	기관실 지휘	기관실 지휘	현장 침수 부위 판단 조기 조치	기관실 총 지휘	현장 지휘, 추가 유출방지책	발전기 정상 가동 확인, 기관실 침수 확인, 수색및구조
	랜턴,무전기							
1 기 사	3번 MES 3번 구명뗏목 정장	화재 구역 통풍기 차단, 기관실, 각종 비상 펌프 조작 화재 진압 작업 보조	현장, 구명 부환 인명 구조작업	기관실 기관장 보좌	기관실, 수밀문 배수펌프 작동 기관실 탱크 측심 실시	수리 작업반 지휘	기관실, 기관실 지휘 각종 기기 조작 현장 유출원 제거 각 탱크 측심	비상 발전기 가동 준비, 여객실 잔류 인원 수색및구조
	기관 LOG BOOK, 랜턴							
갑 판 장	4번 MES 4번 구명뗏목 정장	현장 방화복 착용 화재 진압 작업	현장, 풍하측 개구부 Ladder 설치	선수 투묘준비	현장, 파공부 수밀 작업	선수, 1항사보좌 필요시 투묘준비	현장 유출방제 작업	여객실 잔류인원 수색 및 구조
	모포							
조 기 장	2번 비상사다리 6번 구명뗏목 정장 여객 유도	여객 안정 및 피난유도 대기 구호반	여객 안정 유도	수리 작업반	여객 안정 및 피난 유도	수리 작업반	현장, 유출원 제거, 방제작업	여객 비상집합 장소유도
	모포							

▣ 비상신호 : 단음 7회, 장음 1회(기적, 비상벨) - P69 참조

▣ 선내방송 : 총원 퇴선 부서 배치(3회반복)

※ 직무대행자

: 1항사→2항사, 2항사→갑판장, 갑판장→갑판원, 갑판원→사무원,

기관장→1기사, 1기사→2기사, 2기사→조기장

## [붙임 11]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선내 비상훈련의 주기

구 분		주기	대상자	
선내숙지훈련		수시	모든선원	
해상인명 안전훈련	소화훈련	10일	모든선원	
	퇴선훈련	10일	모든선원	
해난사고 대응훈련	선체손상 대처훈련 (충돌 및 좌초, 추진기관 고장, 악천후 대비 등)		3개월	모든선원
	인명사고시 행동요령	해상추락	6개월	모든선원
		밀폐공간 진입 및 구조	2개월	모든선원
	비상조타훈련		3개월	모든선원
기름유출 대비훈련		매월	모든선원	

###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 비상상황 유형

구분	비상상황 유형	보 고 기 준
1.	소화	선내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써, 확산되어 선박인원으로 제어 불가능한 경우, 선박의 안전 및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퇴선	화재 및 충돌·좌초로 인하여 선박을 탈출하여야 할 경우
3.	비상조타	선박 조타기의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본선의 위험여부, 본선자체수리여부, 타선박 운항 상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 판단하여 대처한다.
4.	인명구조	선원 및 여객이 해상에 빠진 경우 자선이 수색 및 구조를 하는 경우 및 타선박의 지원 사항 포함
5.	기름유출대처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방지 및 유출된 기름의 수거
6.	충돌·좌초 및 전복	충돌로 인한 파손 부위의 확인 및 침수 방지와 전복으로 인한 비상대응 훈련
7.	추진기관 고장	신속한 보고와 효과적인 선조취를 취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유사시 비상투묘
8.	밀폐구역	밀폐구역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대응훈련
※ 통신유지 사항		SSB, VHF, 무선전화기 등 가능한 한 통신수단을 사용한다.

## 비상대응훈련 시나리오

### 1). 소화훈련

- 화재사실을 인지한 최초 발견자는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 이라고 소리를 질러(또는 비상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며,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최대 활용 등 화재초기 조치를 한다.
- 최초 화재 발견자의 목소리를 인지한 다른 승무원은 비상벨의 작동과 함께 선교에 화재사실을 통보한다.
- 선장은 비상신호(적당한 간격 반복)와 함께 여객 동요방지를 위해 화재상황을 간략하게 방송 후 삼항사에 “00장소에서 xx급 화재발생 총원 소화부서배치 붙어” 라는 방송을 실시하는 등 선교에서 소화훈련의 총 지휘를 하며 기관 사용이 가능한 경우 화재현장이 풍하 쪽으로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 승무원은 각자 지참물을 가지고 화재현장으로 이동하면서 “00장소에 xx급 화재발생” 이라는 고함을 치면서 이동한다.
- 현장에 도착한 현장반장은 화재 범위와 원인등을 파악하여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기관실 이외의 화재시 현장반장은 1항사가 담당하며, 자장식 호흡구는 갑판수B가 착용한다.  
(기관실 화재의 경우 현장반장은 기관장이 담당하며, 자장식 호흡구는 조기수B가 착용한다)
- 현장반장으로부터 화재상황을 보고 받은 선교의 선장은 소화작업에 적절한 지시를 하며, 또한, 선장은 VHF, 무선전화기를 통하여 화재발생 현황 및 본선조치사항, 구조필요성 여부를 요청하여야 한다.(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
- 현장의 현장반장은 소화범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소화작업에 임한다.  
[ 화재현장의 전원차단, 통풍기차단 및 적절한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전압 그리고 인접 격벽에 살수(화재확산 방지)]
- 기관장은 발전기의 작동불가로 소화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할 시 비상소화펌프를 작동한다.
- 선장으로부터 화재상황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지원요청에 대한 관련기관에 보고 및 소방선 수배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화재진화가 완료되면 선장은 여객에게 안내방송을 실시한 후 갑판장(항해사)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선장에게 보고 한다.
- 선장은 화재의 잔존여부 확인을 위한 견시자 한명을 남겨두고, 상황 종료와 동시에 “소화부서 배치해제” 란 방송을 실시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 2). 퇴선훈련

- 선장은 본선의 상황에서 퇴선 결정을 하면 비상신호(단음7회후 장음1회) 및 여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현 위치에서 침착하게 대기하면서 다음 지시에 따라 행동 하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선장은 퇴선이 결정되면 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본선의 승선인원 및 위치, 퇴선이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조난신호를 작동하여야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관할관청(지방청, 관할 해양 긴급신고번호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부터 퇴선의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관할관청(지방청, 관할 해양 긴급신고번호119에 보고하고 구조선의 파견여부 등 구조수단을 검토하여야 한다.)
- 퇴선신호 및 방송을 청취한 승무원은 각자 지참물을 들고 소집장소로 이동하면서 “총원 퇴선배치불어” 라는 복창을 하면서 소집장소로 뛰어간다.
- 승무원이 각자의 위치에 전부 소집되면 슈터장은 인원보고를 선교위 선장에게 한다.
- 선교의 선장은 슈터장들에게 구명뗏목 강하(투하)준비 명령을 내린다.
- 선교의 퇴선명령이 내려지면 슈터장은 반원들에게 각각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토록 지시하고, 진행상황을 확인 및 지도한다.
- 사무장과 사무부원들은 여객들을 질서있게 퇴선위치로 안내토록 총괄한다.
- 1항사와 각 슈터장은 구명뗏목의 연결줄 및 자동줄이 잘 매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슈터장은 선장으로부터 구명뗏목의 강하(투하)지시에 의거 구명뗏목을 강하(투하)한다.
- 현장반장 및 슈터장으로부터 퇴선준비 완료의 보고를 받은 선장은 퇴선 명령을 내린다.
- 선장은 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퇴선사실을 통보하고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구조수단을 결정하고 본선선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본선 여객 및 선원들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 및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선장은 “퇴선” 이라는 말과 함께 훈련상황을 종료하며, “퇴선부서 배치해제” 의 선내방송 후 전 승무원을 선교로 집합하여 훈련 결과를 평가한다.

### 3). 비상조타훈련

- 선장은 조타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감속하고 비상신호 (장음3회 반복)와 여객에게 간략하게 방송하고 기관장은 비상조타 위치로 이동하며, 관계기관(해양긴급신호 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보고한다.
- 선장은 본선주위의 타선박의 통행량 확인 후 조타기 불능의 신호기류(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 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선장은 항해사(현장반장)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비상조타로 전환한다.
- 선장은 조타기 고장으로 선박이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면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조타기고장 발생원인, 자체 수리 가능여부, 조타기 수리 소요시간 등을 보고 한다.
- 기관장은 조타기 자체수리 등 조치한다.
- 선장은 비상조타 만으로 아접안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한 수심이 낮은 쪽으로 항해하면서 즉시 투머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한다.
- 선장은 본선에서 조타기 자체수리가 불가할 경우 비상조타로 가까운 기항지까지 입항 가능여부와 필요한 경우 예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수리완료 되면 비상조타를 종료하고, 여객에게 안내방송 후 회사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조타기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포함)를 실시 후 “비상조타부서 배치해제”란 방송과 함께 훈련사항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 4. 인명구조훈련

- 선장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자는 큰소리로 「OO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프로펠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러 기관을 정지시킨다.
-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져 주며,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점화등, 주간에는 자기 발연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 선장은 선내 경보를 울리고, 필요하다면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 구조반(항해사/갑판장)은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서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조선)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 선박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국제신호기 "O"기를 올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음을 알린다.
- 필요하다면 긴급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떨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조끼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 표시를 계속한다.
- 구조반은 익수자와 본선간의 상대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적절한 구조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반에게 지시한다.
- 익수자 위치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 시, 실종시간을 추정하여 항로를 회항하면서 익수자를 탐색 한다.
-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관계기관(해양긴급신고119, 해상교통관제센터, 운항관리센터 등)에 즉시 VHF, 무선전화기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보고한다.
-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 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내용 등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고 "인명구조 배치해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훈련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 5). 기름유출 대처 훈련

- 본선 급유 중 급유선의 송유호스 파열로 기름 유출
- 최초 발견자는 “XX장소에 기름유출 발생” 을 크게 외친다. 선장은 즉시 급유선에 연락하여 급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비상신호와 함께 오염방제부서 배치발령(비상벨 단음7회, 장음1회)을 한다.
- 선장은 기관장에게 본선에 비치된 방제 자재를 사용하여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 후 유출원인과 유출량을 확인하고 현장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
- 기관장은 방제작업을 지휘, 갑판상의 유출유 방제작업에 임한다.
- 선장은 현재의 상황(유출량 및 확산정도)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선장은 기름유출 구역을 포함한 본선에 화재의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화재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여객이 승선해 있을 경우 여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지원요청을 한다.
- 본선 자체적으로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위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현장을 마무리한 후 상황을 종료한다.
- 선외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 발생시 사고관련 자료를 작성, 사고보고서를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선명, 사고유형, 사고일시, 장소, 사고개요, 추정사고원인, 확산 범위, 본선 조치사항, 육상지원요청사항, 기타 참고 사항 )
- 훈련 종료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 6. 추진기관 고장훈련

- 항해 중 조타실의 엔진 오퍼레이팅 인디케이터에 알람이 울리며 엔진이 정지
- 선장은 기관장에게 기관고장 원인과 수리 가능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필요시 비상 투표를 고려한다.
- 기관장은 본선에 부속품이 있으므로 자체수리가 가능하고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선장에게 보고한다.
- 선장은 즉시 비상부서배치신호를 발령하고 운전부자유 형상물 게시(즉, 주간에는 흑구2개, 야간에는 홍등2개, 음향신호 단음 5회 이상) 및 VHF로 인근 선박에게 주위환기 방송을 실시하며 침로유지를 하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다.
- 선내 방송으로 위 사실을 여객에게 알리고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한다.
- 자체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선장은 비상 투표 혹은 임의좌주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객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예선을 요청하며 선장은 안내방송을 통해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동요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
- 선장으로부터 육상지원을 요청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지원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체수리가 가능하다고 기관장에게 보고를 받고 주위 해상교통을 파악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DRIFTING하기 시작한다.
- 선장은 기관장으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고 엔진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엔진고장 수리완료 보고(고장원인 포함)를 하고 여객에게 위 사실을 안내방송을 통하여 알리며 “추진력 상실 부서배치 해제” 라는 방송과 함께 훈련 상황을 종료한다.
- 훈련 종료 후 선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한다.

## 7). 충돌·좌초 및 전복사고 훈련

### (충돌)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불어 발령을 하고 여객의 안전여부와 본선의 침수 등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 상대선박을 호출하여 상대선박의 피해상황을 파악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줄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 시 응급조치를 실시 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인해 침수 발생 시 썰기 등으로 방수 조치를 한 후 퇴선 여부를 판단한다.
- 피해정도가 적고 자력으로 회항이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항구로 회항한다.
- 선장은 필요시 예인 등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 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좌초시)

- 선장은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비상경보 및 비상부서 배치 불어를 발령하고 여객의 안전여부와 본선의 침수 및 피해 상황을 조사한다.
- 선장은 즉시 위 상황을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게 보고한다.
- 여객에게 동요하지 말 것과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방송하고 환자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한 후 환자를 안정시킨다.
- 파공으로 침수 발생 시 썰기 등으로 방수 조치한다.
- 침수가 없고 자력으로 이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자력 이초하여 가까운 항구로 가서 정박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 침수가 없고 자력으로 이초가 가능하다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보고하고 자력 이초하여 가까운 항구로 가서 정박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 본선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선장은 퇴선 혹은 예인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는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에 즉각 위 사실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 지원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 (전복시)

- 선장은 전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유지하여 정해진 소집 장소에 집합하게 한다.
- 선장은 승무원에게 전 구명설비를 투하하여 퇴선을 준비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 및 인근선박에 구조를 요청한 후 퇴선을 명령한다.
- 구조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는 실행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선장에게 통보한다.
- 구조요청을 받은 안전관리책임자(운항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구조방법을 승무원 및 여객에게 통지하여 여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승무원들은 여객의 신속하고 안전한 퇴선을 유도한다.
- 여객전원이 전 구명설비 등에 앉거나 퇴선한 것을 확인한 승무원들을 퇴선시 소지해야 하는 지참물을 소지하고 마지막으로 퇴선한다.
- 선장은 훈련 종료 후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

## 8). 밀폐구역 훈련

- 운항 중에는 밀폐구역(각종 TANK 맨홀)이 상시 폐쇄(seal)되어 있는사항으로 밀폐구역 진입 등이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훈련은 교육으로 대체
- 도크수리 시에 발라스트 탱크 맨홀을 개방 후 휴대용팬을 가동하여 혹시 모를 가스프리를 하던 도중 맨홀을 반만 덮어놓은 사항에서 작업자가 탱크 내로 추락하는 사고발생으로 추정되는 사항 발생가정.
- 최초 발견자는 즉시「○○에 사람이 추락했다」,「○○에 사람이 빠져 의식불명 상태다」등을 소리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갑판 당직사관에게 통보한다.
- 갑판 당직사관은 선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비상 배치신호 발령 및 선내방송을 통하여 선교지휘 및 당직반 / 현장구조반 / 현장지원반을 소집 및 배치시킨다.
- 1항사는 지정된 진입구조원과의 원활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진입 구조원에게 트랜시버를 지급/휴내토록 하고, 또한 진입 구조원과 구명줄 신호 담당자와의 상호 신호방법을 합의토록 한다.
- 1항사는 밀폐구역내의 충분히 환기를 실시한 시간 등을 확인하고 진입구조요원으로 하여금 진입 / 구조토록 한다.  
반드시, 입구에 감시자 배치, 2인 이상 작업해야하며, 계속해서 통풍을 시행한다.
- 밀폐구역에서 구조된 환자를 들것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선내 적절한 장소로 운반한다.
- 3항사 / 선내 의료관리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공호흡, 부상부위 치료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선장은 육상 긴급의료지원 필요 시 즉시, 119또는 안전관리자(D.P)와 협의 시행한다.

## [붙임12] 승객의 비상시 행동요령

-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여객선에서 훈련 및 비상 시 사용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 비상매치(해제)신호 : ●●●●●●●● ■■ (단음 7회후 장음 1회)
  - 비상해제신호 : ■■ ● ■■ ● ■■ ● (장음 1회 단음 1회 3회 연속반복)
  - 퇴선 신호 : ■■ ■■ ■■ ■■ ■■ (장음신호 반복)
  
- 화재 발생 시
  - 화재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장소에 화재 발생이라고 소리를 질러(주위에 비상벨이 있는 경우 벨을 누른다.)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승무원에게 알린다.
  - 근처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다.
  - 선내방송이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퇴선상황 발생 시
  - 선내방송과 비상신호를 청취한다.
  - 주위에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탈출한다.

### [붙임13] 여객선의 장비 및 시설현황

#### 1. 항해·통신장비

번호	품 명	모델명 (Serial No)	제조회사 / 일	설치위치	수 량	비 고
1	RADAR	JMA-3356	JRC	BRIDGE	1	0050
2	RADAR	JMA-5212	JRC	BRIDGE	1	520526
3	ECHO SOUNDER	SES-5000	SAMYUNG	BRIDGE	1	7208051
4	DGPS PLOTTER	NAVIS 3800	SAMYUNG	BRIDGE	1	7204197
5	AIS	AIS 50AM-E	SAMYUNG	BRIDGE	1	7204259
6	NAVTEX	NR-50	SARACOM	BRIDGE	1	SQA-NR-50
7	S-VDR	S-VDR S1	CONSILIUM	BRIDGE	1	2000000741
8	GYRO COMPASS	CMZ 900B	APS	BRIDGE	1	15425
9	MAGNETIC COMPASS		SARACOM	BRIDGE	1	
10	SPEED LOG	R-1A	CONSILIUM	BRIDGE	1	SLE-0395
11	ANEMOMETER	AT-200	HERIANA	BRIDGE	1	H175333
12	VHF	STR6000B	SAMYUNG	BRIDGE	1	7208347
13	VHF	STR6000B	SAMYUNG	BRIDGE	1	7208348
14	PUBLIC ADDRESS	CPA 9200	CMR	BRIDGE	1	
15	COMMON BATTERY TELEPHONE	공전식 전화기				
16	DAY LIGHT SIGNAL	CXD8	HAXING	BRIDGE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2. 구명장비

번호	품 명	모델명 (Searial No)	제조회사 / 일	설치위치	수 량	비 고
1	SART	RT-10	SARACOM	BRIDGE	1	
2	EPIRB	SEP 500	SAMYUNG	BRIDGE	1	
3	TWO WAY VHF	HT 644	ENTEL	BRIDGE	1	
4	TWO WAY VHF	HT 644	ENTEL	BRIDGE	1	
5	ROCKET PARACHUTE FLARE		KOSTEC	BRIDGE	4	
6	LIFE JACKET			PASSAGE D.	240	
7	LIFE JACKET			BRIDGE D.	34	
8	LIFE JACKET FOR CHILD			PASSAGE D.	24	
9	LIFE JACKET FOR INFANT			PASSGE D.	7	
10	LIFE BOUY			PASSGE D.	1	
11	LIFE BOUY WITH LIGHT			PASSGE D.	2	
12	LIFE BOUY WITH LINE			PASSGE D.	2	
13	LIFE BOUY WITH LIGHT & SMOKE			NAV.DECK	1	
14	LIFE RAFT (50P)			BRIDGE D.	6	
15	MES			BRIDGE D.	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 소화장비

번호	품 명	모델명 (Searial No)	제조회사 / 일	설치위치	수 량	비 고
1	SPRINKLER		SEA PLUS	BRIDGE/ TANK TOP	1	
2	WATER SPRAY		SEA PLUS	CAR DECK	1	
3	FIRE DETECTOR CONTROL	JB-QB-4508	SEA PLUS	BRIDGE	1	
4	SMOKE DETECTOR		SEA PLUS		67	
5	HEAT DETECTOR		SEA PLUS	E N G / R M , GALLEY	2	
6	EM'CY FIRE PUMP			BOW ROOM.	1	
7	FIRE ISO V/V			CAR DECK	1	
8	INTERNATIONAL SHORE CONNECTOR			FORE CASTLE	1	
9	FIRE HOSE 40A X 18M X NOZZLE 12mm		SEA PLUS	PASSGE BRIDGE NAV.BRIDG	6 4 2	
10	FIRE HOSE 40A X 18M X NOZZLE 19mm		SEA PLUS	CAR DECK	8	
11	FIRE HOSE 40A X 15M X NOZZLE 19mm		SEA PLUS	ENG/RM	2	
12	FIRE EXTINGUISHER 9L FOAM		SEA PLUS		34	
13	FIRE EXTINGUISHER 5.0KG CO2		SEA PLUS		4	
14	WHEELED FIRE 45LTR FOAM		SEA PLUS	ENG/RM	1	
15	FIXED CO2 SYSTEM 45KG X 12 EA	FIXED CO2 SYSTEM 45KG X 12 EA	SEA PLUS	CO2 ROOM	1	
16	FIRE MAN'S OUTFIT		SEA PLUS	NAV DECK	1	
17	FIRE MAN'S OUTFIT		SEA PLUS	BRIDGE DECK	3	
18	SPARE 5.0KG CO2		SEA PLUS	BATTERY ROOM	2	
19	CARTRIGEXFOAM		SEA PLUS	BATTERY ROOM	15	
20						
21						
22						
23						
24						

#### 4. 기관장비

번호	품 명	모델명 (Searial No)	제조회사 / 일	설치위치	수 량	비 고
1	NO.1 MAIN ENGINE	6MG26HLX	NIGATA	ENG.RM	1	SEA.NO27632
2	NO.2 MAIN ENGINE	6MG26HLX	NIGATA	ENG.RM	1	27631
3	NO.1 GENERATOR	AD126T1S	DOOSAN	ENG.RM	1	
4	NO.2 GENERATOR	AD126T1S	DOOSAN	ENG.RM	1	
5	EM'CY GENERATOR	AD136S	EWCKG	ENG.RM	1	
6	BOW THRUSTER ENGINE	V158TIH	DOOSAN	BOW ROOM	1	
7	NO.1 M/E L.O AUX PUMP	ALG-80	NANIWA	ENG.RM	1	
8	NO.1 M/E L.O AUX COOLER	YL-15-3005H	YAMASHINA	ENG.RM	1	
9	NO.1 M/E R/G AUX LO PUMP			ENG.RM	1	
10	NO.1 M/E R/G AUX COOLER	ALGT-50H		ENG.RM	1	
11	NO.1 M/E R/G	MGN2843ZY-2	HITACHI	ENG.RM	1	
12	NO.2 M/E R/G	MGN2843ZY-2	HITACHI	ENG.RM	1	
13	NO.1 M/E F.W HEATER			ENG.RM	1	
14	BILGE/BALLAST PUMP	JHSD-65B	JINYANG	ENG.RM	1	
15	G/S & FIRE PUMP	JHSP-65B	JINYANG	ENG.RM	1	
16	M/E COOL S.W AUX PUMP	B6-N290	NANIWA	ENG.RM	1	
17	M/E COOL F.W AUX PUMP	B6-N0298	NANIWA	ENG.RM	1	
18	M/E F.O FEED AUX PUMP	79B-356B	HITACHI	ENG.RM	1	
19	F.O PURIFIER	SH25H	HITACHI	ENG.RM	1	
20	L.O PURIFIER	SH15H	HITACHI	ENG.RM	1	
21	F.O PURIFIRE HEATER	S-101	SEHAN TECH	ENG.RM	1	
22	L.O PURIFIER HEATER	S-101	SEHAN TECH	ENG.RM	1	
23	F.O TRASFER PUMP			ENG.RM	1	
24	L.O TRASFER PUMP			ENG.RM	1	
25	OIL WATER SEPERATOR	MTEMS-05	MARINE TECHNICAL	ENG.RM	1	
26	FRESH WATER PUMP			ENG.RM	1	
27	SANITARY PUMP			ENG.RM	1	
28	AIR COMPRESSOR	S5A	SANWA	ENG.RM	1	

[붙임 14] 선박 문서 보존연한

분류	관련 문서
영구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증서</li> <li>○효력이 영속하는 각종 증서</li> <li>○운항관리규정 관계</li> <li>○항해일지 및 기관일지</li> <li>○해양사고/준사고 보고서</li> <li>○기타 선박운항과 관련한 기록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기록</li> </ul>
5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심사 및 부적합사항 관계</li> <li>○선박검사 관계</li> <li>○선박점검 관계</li> <li>○해양오염방지 관계</li> <li>○선내비상훈련에 관한 기록</li> </ul>
3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원관리 관계</li> <li>○선원자격 관계</li> <li>○선원교육 관계</li> </ul>
1년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행통보</li> <li>○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li> </ul>
6개월 보존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기록</li> <li>○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기록</li> </ul>

## 내부심사절차서

### 1. 심사 구분

- 가. 정기내부심사 : 연1회 이상 선박/안전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실시
- 나. 특별내부심사 : 특정사유 발생시 최고경영자 승인을 얻어 특정선박 또는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

### 2. 내부심사 주요 내용

- 가. 회사 안전 목표/방침 이해 여부
- 나. 운항관리규정 이행상태, 적합성 및 상호 모순성 여부
- 다. 문서 및 기록유지 관리상태, 부적합사항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
- 라. 교육훈련 실시 여부 등

### 3. 내부심사자 자격요건

- 가. 당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직급이 과장 이상인 자
- 나. 선박안전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다.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 4. 내부심사 계획 및 준비 절차

#### 가.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 1)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자)는 당해연도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내부심사 계획을 수립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심사대상에게 심사 실시 10일전까지 통보한다.
- 2) 내부심사 계획서에는 심사목적, 심사종류, 심사대상 심사범위, 심사일정, 심사(심사원) 구성, 내부심사 점검표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나. 심사수행

##### 1)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 시작 전 심사자, 피심사자를 참석시켜 아래사항을 합의한다.

- 심사의 목적 및 범위, 심사방법, 심사자 소개 심사절차 및 일정
- 이전심사의 미결사항, 피심사부서 심사 담당자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 2) 심사수행

- 심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 및 내부심사 주요내용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한다.
- 심사대상 또는 선박의 업무진행에는 최소의 영향을 주도록 심사한다.

-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피심사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피심사부서 담당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 반영한다.
- 피심사부서장 또는 선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 및 조치기한을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종료회의

심사팀장은 피심사부서 해당직원을 참석시켜 아래의 심사결과를 설명 협의한다.

- 심사결과의 종합평가, 부적합사항 또는 권고사항 확인 및 설명
-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절차 및 조치시한 확인 및 필요시 재조정
- 운항관리규정 개선에 필요한 기타 필요한 사항

5. 심사결과

가. 결과보고 절차

안전관리자는 내부심사 점검표를 작성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1) 해당부서에서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2) 안전관리자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직접 확인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보고서를 해제한다.

6. 최고경영자는 내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의 문서화된 운항관리규정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16] 내부심사 점검표 및 보고서**

내부심사 부적합 사항 보고서		부적합번호	(부)	
		발행일자		
<input type="checkbox"/> 내부심사 <input type="checkbox"/> 고객불만사항 <input type="checkbox"/> 자체발행		대상부서		
<b>※ 부적합사항</b> 1. 관련문서(근거) 2. 부적합내용		<input type="checkbox"/> 중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경부적합 <input type="checkbox"/> 권고사항		
해당부서장	심사자(발행자)	심시팀장		
<b>※ 부적합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 방안</b>		조치기한		
시정조치부서	검토(심사)일	검토(심사)자		
<b>※ 시정조치내용</b>	시정조치일자	시정조치부서장		
<b>※ 시정조치확인결과</b>		<input type="checkbox"/> 종결승인 <input type="checkbox"/> 재조치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 시정조치 재시행시 신규번호:(부)   -   -   -   일련번호부여				
확인일자	확인(승인)자	재조치기한		
<b>※ 유효성/효과 검토 결과</b>		종결일자:	최종확인자:	

내부심사점검표		심사대상		
		심사종류		
심사목적		심사기간		
운항관리규정 항목		부적합	권고	
1. 안전관리 목표 및 방침			심사자 명단 및 심사일정	
2. 안전관리 조직			책임심사자	
3. 출항 또는 운항정지 조건				
4. 운항기준도				
5. 선장의 보고사항				
6. 위험물 취급			일반심사자	
7. 여객 승하선 및 화물 적재				
8. 선박 및 수송시설의 점검경비				
9. 해양사고등 사고발생시 조치				
10. 여객준수사항의 전달			부적합(총        건)	
11.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방지 교육			구분	중부적합(○)                  건
12. 문서 및 자료관리				경부적합(△)                건
13.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권고사항                      건
14. 내부심사			원인 별 분석	절차내용 미흡                건
15. 선박소유자의 확인·검토·평가				절차 불이행                      건
합            계				업무이해 미흡                건
				시정조치 미흡                건
				증거(기록)미흡                건
				지원 미흡                      건
***심사결과 요약 및 분석***				
유점	1.부적합사항 보고서                  부			
작성인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주) 작성 → 책임심사자,    검토자 → 안전관리책임자,    확인자 → 사장				

## 해상직원 인수인계서

선명:		항구명:	
직책:			
인계자 성명:	(서명)	년	월
인수자 성명:	(서명)	년	월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휴가기간에 대리 근무자 에게 아래와 같이 업무를 인수인계합니다.

### 1). 업무인수인계 사항

※ 선장 인수인계사항 첨부

---



---



---



---

### 2). 인계자 비상상황 발생시 업무분장 (비상부서배치)

- 총괄 지휘 / 비상태치표 첨부

---

### 3). 기타 서류업무 인수인계사항

---



---

### 4). 업무의 특이사항 및 업무시 주의사항 (안전수칙)

- 일출항 조전시 특이사항 및 기상상황 등의 기타 당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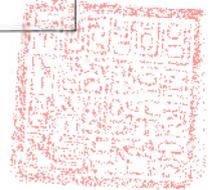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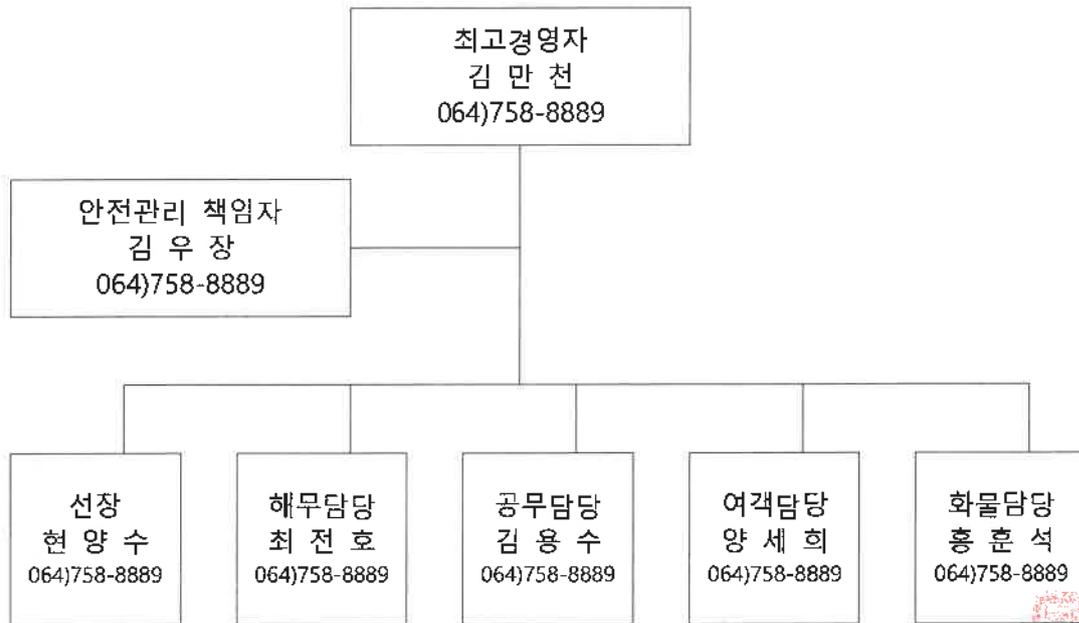
---



---

1. 이 인수인계서는 해상직원이 휴가시에 반드시 작성하셔서 보관해야 합니다.
2. 대무업무자는 상기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비상부서배치 및 작업시 안전수칙 사항등을 필히 숙지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선장/기관장 외 인수인계서에는 운항관리규정에 나와있는 사항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8] 안전관리조직도**



[붙임19] 위험물운송적합증

■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5.3.10>

제 MKP-FITDG-0008-21 호

위험물운송적합증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여객선(카펠리어객선) 승림플루오션
선박번호	MPR-176214
선적항	신안군
선박소유자	(주)승림해운

위험물의 분류 또는 항목	위험물의 적재장소
<p>■ 1. 석유류 (등유(연료)호) - 위험물 등급 3 인화점이 23℃ 이상 61℃ 이하인 것, 가스오일(다중연료 또는 가열용 포함) - 위험물 등급 3 인화점이 23℃ 이상 60℃ 이하인 것, 석탄타르 종류물 - 위험물 등급 3 인화점이 23℃ 이상 61℃ 이하인 것, 도료 - 위험물 등급 3 (23℃에서 점도가 200mpa·se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 인화점이 23℃ 이상 61℃ 이하인 것.</p> <p>■ 2. 산소(OXYGEN, COMPRESSED) : UN No. 1072 공기(AIR, COMPRESSED) : UN No. 1002)</p>	<p>적재장소 : 1, 2, 복위된 저장갑판 적재방법 : 1. Packaged Form(윙크로릭) 2. Packaged Form(압축용기)</p> <p>• 주의</p> <p>■ 차림배치는 기술인원 처량적재배치도에 따른 것 ■ 등급상 중 다량의 위험물을 적재한 윙크로릭은 적재할수 없음. -액체산소, 액체암모니아, 염산, 황산, 말초올유, 아세트산비닐, 석유중류물(저인화점 인화성 액체인것만 해당), 플루엔 ■ 개별화물의 포장, 적재, 격리 및 기타 운송과 관련된 요건은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위험물선박운송기준'에 따라야 함.</p>

위 선박은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제3제2항에 따라 위의 같이 위험물을 적재장소에 적재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선급회장



201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sup>2</sup>)